



II. 법인세법 · 법인조세전략 개요와 계정별 회계 · 세무비교



1. 법인세 과세방법과 중요사항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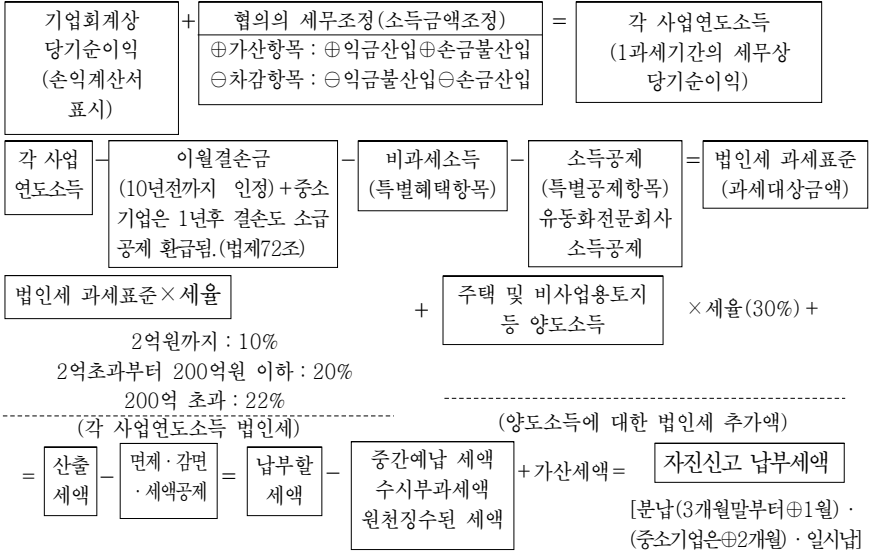
(1) 법인이 내야하는 소득 · 이익에 대한 세금의 종류

법인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매년의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지가특별 급등지역토지 · 주택 · 비사업용 토지 등 부동산양도소득의 법인세 및 청산소득 법인세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비교표와 같다.

- 각 소득원천별 과세여부 (지방소득세 10% 추가 부과됨) -

과세소득별 법인유형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22%)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법인세(30%)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의 모든 소득 (공공법인도 22%) · 조합법인 등 : 당기순익×9% ·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임.	· 해산(합병)시의 청산소득 (공공법인도 22% 과세) · 조합법인 등 : 당기순익×9% ·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임.	· 법인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30% (미등기시 40%) 과세
○ 비영리법인	· 국내외의 모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납세의무 없음(국가 귀속)	· 위와 같음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납세의무 없음	· 위와 같음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도(광의의 세무조정) -



(2) 수입 · 매출 · 지출 · 비용 · 원가의 익금과 손금비교

항목구분 과세여부	수입 · 수익 항목	지출 · 비용 항목
과세포함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순재산증가거래, 이익창출항목, 모든 사업상의 영업수입금액, 수입수수료, 부동산임대주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입·수익,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보험업법상 고정자산 평가차익, 무상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부채감소이익, 손금처리된 금액의 환입, 손금계상한 적립금준비금환입, 배당금과 분배금의제액, 폐기물예치금 반환액,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간주익금(차입금과다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자만 해당함), 토지재평가차익 재원(1%과세분)의 무상증자	손금불산입, 손비계상한 잉여금 처분액, 임원상여금과 퇴직금의 규정 초과액, 건설이자배당금, 법인세·외국납부조세·지방소득세 및 벌과금·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업무무관경비, 각종충당금·준비금의 세무상한도 초과액, 주식할인발행차금, 자산평가차손, 건설자금이자,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소득귀속자, 불분명한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접대비·기부금(5년내 이월손금산입) 한도초과, 지급이자불산입(업무무관, 비업무용 목적), 부당합병의 이월결손금



<p>과세제외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p>	<p>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익,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이월익금, 고정자산의 평가차익과 재평가법상 재평가차익, 법인세 등환급·충당액, 국세·지방세 과오납환급금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주권상장법인 배당소득금액의 30%, 지주회사 수취배당소득 100%. 기타 80%, 이월결손금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합병차익(부동산)의 대응손금산입, 토지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 대응(1% 분에 대해)</p>	<p>순재산 감소거래, 제반원가항목, 원가, 업무상 귀속손비나 비용, 양도자산 장부가액, 원료의 매입가액, 공사원가, 부대비용, 판매부대비용, 매출할인·판매장려금, 광고선전비, 모든 인건비, 복리후생적비용, 퇴직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자산임차료, 리스비용, 금융비용, 차입금이자, 대손금, 자산평가차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대손충당금 전입,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 폐기물예치금 납부액,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해외자원 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금지금액(배당가능이익×90% 이상 배당), 장식용소액미술품,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p>
----------------------------------	--	--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

법인 구분	과 세 표 준	세 율
모든 내국·외국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양도가액 -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 양도직접관련비용	○ 법인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 30% (미등기시 40%)
비영리내국법인의 과표 무신고의 경우	소득법 §92 기준시가차액(혹은 실거래차이) - 장기보유공제 - 기본공제(각 자산별 250만원)	소득법 §104의 양도소득세율 적용(6%~38%)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구분	과세표준	세율
영리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시 잔여재산가액 ○ 잔여재산 분배 후 사업계속 ⊖ 자기자본총액 ○ 합병·분할시 합병·분할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금전 기타 자산가액 및 합병교부금-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0%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2%

(5)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금액의 계산방법(지방세법 제89조) : 법인세 ×10%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연면적 등 이익기여도 비율로 안분계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납부세액을 사업장별 종업원수 비용과 건축물 연면적 구성비율의 평균으로 배부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소재지 구에서 일괄납부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 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

$$\left(\frac{\text{해당 시·군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해당 시·군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times \text{해당 시·군의 세율}$$

②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담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신고 및 납부방법】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제89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기본통칙 87…89-1 【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업장 이전시도 납기개시일 현재 관할시·군의 안분부과

법인의 사업장·사무소·영업장 등을 중간에 이전해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이 부과하는데 여러 사업장이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인원수와 건축물면적 평균비율대로 안분부과한다. 중간에 사업장이 신규개설된 경우도 사업연도말로 계산하므로 기간안분계산하지 않고 1년간 계속된 것으로 보아 산식대로 계산한다.

사무소 이전 전후의 수시부과 제외

법인이 법인세 확정납부 후 당해 연도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분 안분금액은 이전된 다른 시·군에서 부과한다. 또한 현재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법인세분을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의 영업장 등이 납기개시일전에 이전을 하였으나 이미 이전전 영업장 소재지 시·군에서 수시부과한 법인세분이 있으면 수시부과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이전전 시·군이 된다는 것이다.

2. 결산과 관련된 중요거래의 계정별 외계와 세무비교예설

(1) 자산평가방법의 일반기준과 원칙 등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평가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주의 대신 · 원가주의 · 취득관련 부대비용 · 차감항목여부 · 금융비용의 포함여부 	<p>제6장, 제10장, 제11장</p> <p>①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증여·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기준시가 및 공시지가)가 취득원가임.</p> <p>② 최초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은 원가주의(원가모형)나 공정가치모형(재평가모형) 중 선택하여 적용하는데, 원가모형의 장부가액은 원가\ominus감가상각누계액\ominus손상차손누계액, 재평가모형의 장부가액은 재평가일 공정가치\ominus재평가이후 감가상각누계액\ominus재평가이후 손상차손누계액으로 계산</p> <p>③ 유형자산 취득시 국·공채 등의 불가피한 매입의 경우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할인한 평가감 금액과의 차액, 즉 평가감 손실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함(매당초 매각했다면 취득원가로 합산하며, 이중별도매각시는 처분 손실비용으로 계상함).</p> <p>(차) 취득가 40 (대) 국공채 100 (차) 현 금 60</p> <p>④ 모든 자산(재고·투자·유형·무형자산)의 제조·매입·건설(장기간 소요된 재고자산만)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하며,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수익은 원가에서 차감함.</p> <p>- 제조·매입·건설완료 때까지 발생한 이자비용과 유사한 금융비용을 원가로 계산(주석 기재함)</p>	<p>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 :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원가주의</p> <p>① 외부매입자산 : 매입가액 + 취득세·등록세·부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제조·건설·생산 : 재료·노무, 기타 제반경비, 부대비용 · 현물출자·합병·분할취득 : 적격합병 등, 장부가액, 그 외 시가 · 현물출자·합병·분할취득 관련주주의 주식취득가 : 장부가액\oplus합병 등 대가\oplus분여이익 · 기타 여러 방법상의 취득자산·취득당시 시가 <p>② 취득가액에 가산 : 특수관계 주식을 시가 미달 취득시 익금산입금액(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건설자금 중당 차입금이자(제작·건설·매입에 분명히 소요된 차입금이자), 국·공채매입차액</p> <p>③ 취득가액에 불포함하는 항목 (차감순액계산한다는 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할부(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시 기업회계상 현재 가치 평가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취득원가 아니고 부채차감으로) · 연지급방법 수입시 취득가액과 별도 구분된 지급이자 계상액 · 시가·초과매입·출자가액 및 자본거래시 이익분여액 <p>④ 취득가 조정 및 반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평가증 사항이거나 불가피(천재·지변 등)한 합리적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⑤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 손상, 시장가치 급락으로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며 중요하다면, - 장부가액에서 차감(일단 장부가액에서 손실(-)반영). 회수가능금액으로 조정 차액은 감액손실로 당기손실처리, 그러나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이 상승되면 감액전 장부가액까지는 감액손실환입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회계처리함. - 회수가능금액은 순실현가능금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함(감액과 증액내용의 주석기재).	평가감사유-증·감 반영함. • 실질가치 증가관련 자본적 지출금액자산 • 합병·분할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익자산 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금액(기업회계상 지급이자로 F/S 계상해도)의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적용 제외 - 재무제표상 지급이자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지급이자 아님(지급이자손금불산입, 원천징수, 지급조서 제출의무 등 일반지급이자에 적용되는 제반 세무상절차의무 등이 적용안됨). 그러나 회사채할인차금(상각액)은 지급이자로 봄.

(2) 환가성·환금성 자산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비교 : 취득원가주의원칙, 평가감사가 반영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현금, 현금등가물(3개월내), 단기금융상품(1년내) • 예금 등의 기간경과 이자인식 여부 • 미수수익계상 기간별 대응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모든 기업(금융기관 포함)이 발생주의적용으로 기간별 자동 수익반영하고 보정함(현금수입이 없었어도 미수수익계상함. 못받는 금액은 대신에 대손충당금을 적극인식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결산반영여부</th> <th>익금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결산미반영(미수반영안함)</td> <td>수익 아니고 익금산입 아님</td> </tr> <tr> <td>결산반영</td> <td>수익계상되도 익금불산입처리</td> </tr> <tr> <td>원천징수분</td> <td>수익계상되고 자동익금산입됨.</td> </tr> <tr> <td>원천징수안되는 것</td> <td></td> </tr> </tbody> </table>	결산반영여부	익금 여부	결산미반영(미수반영안함)	수익 아니고 익금산입 아님	결산반영	수익계상되도 익금불산입처리	원천징수분	수익계상되고 자동익금산입됨.	원천징수안되는 것		• 수입이자할인액 :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속하는 연도(계산확정·인출·만기 등 권리금액확정), 그러나 결산시 기간경과 대응이자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는 계상연도의 익금입(적극적 계상주의 인정하며 일부러 익금불산입하지는 않음). 외부에서 지급시 원천징수분은 결산상 미수수익 계상해도 익금불산입하며 향후 입금시 익금환입하는바 원천징수 선납세액과 같은 시기로 대응시킴. • 금융, 증권·자금대부업 : 실제 현금수입일(현금주의), 그러나 이자 선금의 선수입이자는 제외
결산반영여부	익금 여부											
결산미반영(미수반영안함)	수익 아니고 익금산입 아님											
결산반영	수익계상되도 익금불산입처리											
원천징수분	수익계상되고 자동익금산입됨.											
원천징수안되는 것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유가증권 (주식, 채권, 단기자금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상방법(원가), 평가이익계상, 평가손실반영 재고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도 적용(금융업의 상품유가증권 등)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시반영: 매입가격 + 부대비용 → 총평균, 이동평균으로 취득원가 산정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3 구분함. 단기매매증권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거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변경 분류함(변경후 공정가액이 취득가액임. 공정가치 변동분 당기손익 반영). 결산시: 공정가액(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 원가)으로 평가 반영하여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공정가액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하며, 없으면 평가기법(최근 거래, 다른 상품 참조 등)으로 함) 	<p>시행령 제75조: 취득원가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가능방법: 개별법(채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적용 주권상장·코스닥상장·비상장법인 등도 주식종류에 관계없이 세무신고시 원가법으로 평가함. 일반유가증권-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선택적용 채권-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선택적용 												
<p>무상증자주식</p> <p>① 받을 때 회계처리 반영안함. ② 연말평가지 평가손익으로 자동회계손익 반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채권의 장부 취득원가를 각각 구분하여 주식 기재함. 평가손실과 이익은 유가증권에서 직접 가감하고 손익계산상 영업외손익에 당기반영함. 평가손익은 개별기준이 아니라 총액기준으로 합계 순가액의 차감잔액과 취득원가 비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평가손익은 손금 및 익금사항 아니며 실제매각 거래시까지 지연됨. 창업중소기업의 부도발생시만 시가평가가능(손금산입가능) 증권투자회사는 시가법 적용으로 손금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일반기업회계기준</th> <th>세무</th> <th>자본잉여금 등 과세 안되는 잉여금의 무상증자시</th> </tr> </thead> <tbody> <tr> <td>주식무상증자입고시</td> <td>반영안함.</td> <td>익금산입 ⊕유보</td> <td>익금산입 ×, 과세 ×</td> </tr> <tr> <td>연말평가지</td> <td>평가증으로 반영(영업외수익)</td> <td>익금불산입 ⊖유보, 나중처분손익시 최종반영</td> <td>익금불산입 ×, 과세 × 최종처분의 경우만 과세됨.</td> </tr> </tbody> </table>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	자본잉여금 등 과세 안되는 잉여금의 무상증자시	주식무상증자입고시	반영안함.	익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 과세 ×	연말평가지	평가증으로 반영(영업외수익)	익금불산입 ⊖유보, 나중처분손익시 최종반영	익금불산입 ×, 과세 × 최종처분의 경우만 과세됨.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	자본잉여금 등 과세 안되는 잉여금의 무상증자시										
주식무상증자입고시	반영안함.	익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 과세 ×											
연말평가지	평가증으로 반영(영업외수익)	익금불산입 ⊖유보, 나중처분손익시 최종반영	익금불산입 ×, 과세 × 최종처분의 경우만 과세됨.											
<p>매출회계 현금거래 (자기앞수표, 당좌수표)</p>	<p><구매자 회계></p> <table border="1"> <tr> <td>(차) 원재료</td> <td>100</td> </tr> <tr> <td> 선납부가세</td> <td>10</td> </tr> <tr> <td>(대) 현금예금</td> <td>110</td> </tr> </table>	(차) 원재료	100	선납부가세	10	(대) 현금예금	110	<p><판매자 회계></p> <table border="1"> <tr> <td>(차) 현금예금</td> <td>110</td> </tr> <tr> <td>(대) 매출</td> <td>100</td> </tr> <tr> <td> 예수부가세</td> <td>10</td> </tr> </table>	(차) 현금예금	110	(대) 매출	100	예수부가세	10
(차) 원재료	100													
선납부가세	10													
(대) 현금예금	110													
(차) 현금예금	110													
(대) 매출	100													
예수부가세	10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당좌수표 (선일자 기일업 수 지키는 경우)	〈구매자 회계〉 (차) 원재료 100 선납부가세 10 (대) 지급어음 110	〈판매자 회계〉 (차) 받을어음 110 (대) 매출 100 예수부가세 10
받을어음 (나중기일)	(차) 원재료 100 선납부가세 10 (대) 지급어음 110	(차) 받을어음 110 (대) 매출 100 예수부가세 10
회사의 은행예금 이나 당좌차월로 자동이체지급	(차) 원재료 100 선납부가세 10 (대) 당좌차월 110 (차입금)	(차) 현금예금(당좌예금) 110 (대) 매출 100 예수부가세 10
구매대금 결제시 스템(기업구매전 용카드방법)		
①매출·매입거래	(차) 원재료 100 선납부가세 10 (대) 구매카드미지급금 110	(차) 구매카드미수금 110 (대) 매출 100 예수부가세 10
②실제대금결제 (현금)	(차) 구매카드미지급금 110 (일반날짜대로 지급시) (대) 현금예금 110	(차) 현금예금 110 (일반약정대로 수금시) (대) 구매카드미수금 110
③실제대금결제 (연체 및 선수 입금)	(차) 구매카드미지급금 110 지급수수료(지연지급시) 2 (대) 현금예금 112	(차) 현금예금 109 지급수수료(일종의 이자) 1 (대) 구매카드미수금 110 (조기수금시)
연말재무상태표의 계정표시개념(합계) 대손충당금설정 가능함	매입채무 계정 : 330 소 [지급어음 110] 소계정 계 [외상매입금 110] 과목 공 정 [구매카드미지급금 110] 시안함. 330	매출채권 계정 : 330 소 [받을어음 110] 소계정 계 [외상매출금 110] 과목 공 정 [구매카드미수금 110] 시안함. 330 (차) 대손상각 33 (대) 대손충당금 33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2) 2013년 12월 31일까지 결제금 액에 적용함.	(기업구매전용카드방법(혹은 환 어음, 판매대금추심금액)의 지급 액⊕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이용액 지급액⊖약속어음 1년간 총결제금액) × [0.5% (30일 이 내) ⊕ 0.15% (30일 초과 60일 이내)] ≤ 법인세 × 10%	해당인됨 어음은 일종의 불이익 차감으로 기간의 장단, 적수관계없이 뺐.

계정과목 및 평 가 논 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중 소기업을 위한 대금지급에 적용	
<p>매 출 채 권 (상거래상 외상매 출금·받을 어 음)·미수금·미 수수익 ·대손비용·대손 충당금 등</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1절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계 산한 대손추산액(대손경험률, 개별대손 가능성 등 파악 합 리적 예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비용계상 · 대손추산은 각 건별분석개념임. · 당기대손상각비=총대손추산 액-기설정 대손충당금 잔액 →상거래 채권대손은 판매 비·관리비 처리 · 회수불능채권 발생시 먼저 대 손충당금과 상계한 후 모자라 면 부족액을 당기대손상각비 로 처리 · 상거래 이외 채권의 대손비는 영업외 비용 처리 · 채권재조정의 현재가치 차금 은 대손금으로 보며 세무에서 도 손금인정</p>	<p>법 제34조 :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 채권, 미수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손금산입 · 설정비율 : 채권잔액×1% 혹은 ×실제대손실적비율(=당기대손 금÷전기말채권) 중 큰 금액범 위내로 함(기업회계기준 수용 반영). · 대손실적 추산은 총액의 일정비 율 개념임. · 회수불능액 : 직접손금산입(소멸 시효완성, 회사정리, 화의인가로 회수불능결정, 경매취소된 압류 채권, 파산선고(일반적으로 청 산 등기되어야 함)· 강제집행· 형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 종·행불) · 부도 6개월 이상(만 6개월)된 수표·어음+중소기업 외상매출 금(6개월된 것), 기일 이후 제 시하여 부도방 짚은 것도 대손 금공제허용</p>
<p>단 기 대 여 금 (회수기한 1년내) · 대손비용 · 수입이자계산 인식방법</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영업상 대여금의 대손상각비 는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거래외의 대여금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처리</p>	<p>대손충당금 1% 설정가능, 일반법 인은 발생주의 수입이자계상, 은 행은 현금주의, 특수관계자 대여 금은 인정이자계상하여 익금산입 소득처분</p>
<p>기 타 유 동 자 산 · 선급금, 선급비 용 기타유동계정</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장부계상, 취득원가대로 계상· 반영 평가감 등 손익요인 없음→회수 불능시점에 대손상각비로 영업 외 비용처리</p>	<p>취득반영금액대로 계상</p>
<p>매출채권 양도· 할인 등 감액 · 채권양도나 혹 은 차입금담보</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당해 채권의 권리·의무가 양도 인과 완전히 분리되어 실질적으 로 이전되는 경우 : 매출채권에</p>	<p>· 시행령 제61조 :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 혹은 실제의 대 손추산비율대로계산금액 중 큰 금액임.</p>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나. 양도·할인 내용은 주식기재</p>	<p>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차입아 님.(세무에서도 인정) (차) 현금예금 900 처분손실(영외외 비용) 100 (대) 매출채권 1000 (받을 어음) 기타의 경우(우발채무 등으로 남거나 연대보증 등): 매출채권 을 담보제공하고 차입금으로 기 표함. (차) 현금예금 920 지급이자 80 (대) 차입금 1000 즉 매출채권 해당계정금액은 줄 어들지 않음. · 담보제공 차입금인 경우 결산 기말전후 기간이자 안분계산 (차) 현금예금 930 지급이자 30 선급비용 40 (대) 차입금 1000 (할인이자 70 중 다음연도분 40은 선급비용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처분의 전액을 당기손 실계상과 차입금계상(지급이자 반영)은 기업회계처리 그대로 수용(재법인 46012-180, 2001. 10. 17 재경부예규임) · 시행령 제62조: 상법 소멸시효 (5년, 민법 단기소멸시효: 3년), 민법시효(10년), 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중소기업 은 6개월된 외상매출금도 대손 요건임) · 매출채권 차감하여 없앤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아니고, 그러나 차입금 담보제공개념이 면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으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임(채권 그 대로 계상되므로). · 수입이자의 발생주의 익금산입 가능 · 장기할부 매입채무만 현금가치 평가함. 자산·채권은 현재가치 평가 안하며 원가대로 계상 · 연지급수입의 채권만 평가함. · 채권재조정의 현금할인액은 손 금산입
<p>대손충당금 표시 · 총액·순액주의 계상 · 대차대조표 표 시방법</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채권대손추산액: 대손충당금으 로 채권과목에서 차감형식기재, 혹은 일괄금액을 유동자산합계 액에서 차감형식기재 선택가능 -내용을 주식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32조: 대손충당금 전기분 전액환입. 당기분 전액 손금산입이 원칙이지만, 차감잔 액만 설정하여 손금계상한 것도 세무상 인정됨.
<p>재고자산(상품, 제품, 반제품, 재 공품, 원재료, 저 장품 등) · 장부계상방법 · 재고평가손·재 고감모손 · 평가익의 계상</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 취득시 반영: 제조원가·매입 가격+부대비용: 개별법, 선 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예외적용) 등을 적용 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 액으로 함.</p>	<p>법 제42조, 시행령 제7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하기 전의 기존장부가액대 로 반영(취득원가주의): 평가증 감 무조건 부인 · 취득원가에외사항: 보험업법상 비유동자산평가, 평가성자산의 세법상 평가(재고, 유가증권, 외 화자산, 이연자산)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및 인정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자산은 무조건 저가주의 평가 강제됨 :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으로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함(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며, 감모손실은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평가증이익은 반영안하고 원가대로 계상).→세무는 손금불산입(유보) · 순실현가능가액 = 추정판매가 - 판매위한 추정비용 · 후입선출법 적용 F/P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 차이와 내용을 주석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손·부패·재고, 천재·지변·화재를 입은 비유동자산 및 파산법인 주식은 장부가액 감액하고 손실은 손금반영함. · 재고자산 : 원가법(개별,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이동평균, 매출가격환원법 등), 저가법 · 재고자산 종류별·영업장별로 다른 평가방법 가능 · 재고평가방법신고 : 첫연도 신고기한, 변경시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전까지(즉 올해 9. 30까지) · 선입선출법(부동산은 개별법) 강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내 평가방법 무신고, 신고방법외의 평가, 기한내 변경신고 않고 평가방법 변경시
<p>장기금융상품 (사용제한 예금) · 기간수익인식 평가손익 여부</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기간경과분을 자동수익인식, 부실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상품 등의 수입시기기준(인출·전입·변경 등 권리확정일의 평가증 익금산입 및 수입이자 계상), 미수수익은 익금불산입, 금융기관은 실제 현금 수입기준
<p>투자자산 중 매도 가능증권 · 장부계상방법 · 시가주의 적용 · 결산평가방법 · 평가손익인식 및 회계과목 · 자본법 적용관계 · 평가증 인식여부</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매입가액+부대비용→종목별 총평균, 이동평균법 적용하여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성 있는 주식 : 원가 아니라 공정가액(시가)으로 결산 F/P반영 : 시가주의→장부 취득원가와 F/P평가액 차액은 당기손익항목이 아니고 평가이익·손실 계산액을 자본조정 계정으로 가감 처리함. ① 평가손익 가감순액계상 및 향후 계속 연결 조정 ② 자본조정상의 평가손익은 당해주식의 실제 처분시 처분손익을 당기손익계정으로 회 	<p>시행령 제75조 : 취득원가주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취득원가로, 증권투자회사는 시가법 적용).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시가법(집합투자재산만 해당) · 평가방법의 신고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법인세 신고기한에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함. · 기존 신고방법의 변경 : 변경할



계정과목 및 평가기준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계처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주식 시가·공정가 하락으로 회복 불가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차손을 투자유가증권 감액 손실로 당기손실 직접 반영 처리하며 해당 투자주식의 관련 평가이익, 평가손실(자본조정계상분 금액)은 당기항목인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과 차감 부가함. 감액손실로 ⊖계상된 후 해당 투자주식은 시가법 적용하며 향후 관련 차손익은 평가손익으로 하여 자본 조정에 가감함. · 중대한 영향력있는 주식(투자법인 발행지분의 20% 이상 소유)→시가·공정가액에 관계없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F/P 가격계산, 장부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가감 <p>① 당기순손익원인-지분법평가손·익을 당기 손익반영</p> <p>② 이익잉여금 증감원천-이익잉여금 증감으로 반영</p> <p>③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증감원천-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손실계정과목으로 자본조정증·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F/P상 순자산가액 하락, 회복불가능시 장부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계상하고 당기손실처리 · 순자산가액 회복시 감액전의 취득원가 한도로 감액손실을 환입하고 당기이익으로 처리. 당초원가의 초과 평가증은 인 	<p>평가방법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전 3개월이 되는 날(12월말 법인이면 9월 30일까지)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상 유가증권평가손익을 당기손익 회계반영해도 세무상으로는 전혀 손금·익금반영 안됨. ·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할 때만 손익인식(평가손실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평가익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함), 특수관계통한 매각, 위장매각, 자전거래관련 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해석됨(즉 매각 아니고 평가과정임) · 총평균법을 강제적용하는 경우: 적법기한내에 무신고,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 변경신고없이 방법 변경 · 평가방법의 적법기한 경과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일의 사업연도에는 총평균법 강제적용.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신고방법대로 적용함. ·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제출 <p>※ 참고: 세법상 상장유가증권의 평가규정과 방법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령 제13조→상장유가증권 등은 납세 담보제공일의 종가, 비상장·공개 거래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최종매입원가법의 평가액(상속·증여세법 제63조→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씩, 즉 4개월의 종가평균) ○ 평균시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세령 제4조⇒공표최종시세, 매매거래 기준가격, 상속세법상 평가액법 동일)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식안함. · 시가는 F/P일 증가. 1직전거래일 증가 · 유가증권→투자주식전환시 시가·공정가로 평가하며 평가이익·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함. · 투자주식 취득원가·시가·순자산가·장부가를 주식 기재함.	
투자자산 중 만기 보유증권 · 시가적용 · 평가손익 회계 처리 · 당기손익·자본조정, 유효이자율법 · 계정과목 변경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 취득시 가격 : 매입가액 + 부대비용 → 종목별 총평균. 이동평균법 적용 · 취득원가와 액면가 다른 것 : 관련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으로 가산하여 나감(차액을 연도별 안분하여 이자인식함). (액면가 100 취득원가 80원, 2년만기 이면 1년 지난 후). (차) 유가증권 10 (대) 수입이자 10으로 반영함) · 투자채권취득 장부가액 계상 후 결산시 시가·공정가액으로 계상해야 함. -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익 과목으로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함(익금불산입·유보). · 투자채권 시가·공정가 하락·회복 불가능시 - 장부가와 공정가 관련차액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과목으로 당기손실처리 자본조정계상된 관련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차감 부가함. 감액손실계상 반영후 해당투자채권은 시가·공정	· 유가증권·주식 등의 평가방법과 동일함(세법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해 상품보유 재고자산인지 유가증권인지 구분하지 않고 일괄유가증권으로 세무처리함). → 모두 취득원가주의 ※ 상속세법상 유가증권 평가규정 · 주권상장법인주식(증권시장) : 평가기준일 혹은 증자·합병 사유있으면 사유일부터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격의 평균금액(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 코스닥상장법인주식(코스닥)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증권업협회기준가격 평균액(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 공개모집매출주식(주권 및 코스닥상장등록 위한 주식매출방식) : ①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의 수익환원가치) → (시행령 제54조제1항), ② 금융감독위 유가증권분석가액 준용액(시행령 제57조제1항) ①과 ②중 큰 금액 · 일반법인(비상장법인) : ㉠ 주당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가 법적으로하여 자본조정 가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보유목적이고 만기보유 가능한 만기보유채권은 취득원가를 F/P계상가액으로 함이 원칙(취득원가와 액면가 다른 차액을 상환기간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가감하여 F/P가액으로 조정해 나감) • 만기보유채권이라도 시가·공정가 하락하여 회복불가능시 투자채권 장부가를 시가·공정가로 평가감조정하고 차액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과목으로 당기손실 처리함. 감액조정한 투자채권의 시가·공정가 회복시 감액전의 당초 장부가액까지 회복된 금액만 감액손실 환입과목으로 당기이익 처리함. • 보유목적 변경으로 유가증권 → 투자주식 전환시 : 계정바뀐 투자채권은 F/P일의 시가·공정가로 평가반영하며, 유가증권 평가이익 손실과목으로 당기손익처리 • 보유목적 변경으로 만기보유채권 → 만기보유 이외 채권으로 대체 변경시 : 투자채권은 F/P일의 시가·공정가로 평가반영 관련평가손익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으로 자본조정에 가감 처리하고 이후 보유 및 신규취득하는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불가함. • 투자채권 액면가 유효이자율로 조정된 가액. 시가(공정가)를 주석으로 기재함. 	<p>수익력 가격(=1주당 최근 3년간 수익환원가치로 하되 3년간 순손익액의 비정상증가시 전문평가법인과 회계법인 2개 이상의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할 수 있음) → (시행령 제54조제1항)</p> <p>3년간 순손익가중평균: (직전1년손익×3 + 직전2년손익×2 + 직전3년손익×1) × 1/6, 수익환원율은 연 10%(2010. 11. 5 고시)</p> <p>평가기준일 현재의 미경과 1년 미만 사업연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결산할 필요까지는 없음.</p> <p>㉔ 주당순자산가치(=법인의 순자산가격÷발행주식총수)</p> <p>㉔손익가치와 ㉔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㉔손익가치와 ㉔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가중치로 가중평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중인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강제됨. * 타법인 주식 10% 이하 소유한 법인의 주식평가시 당해 보유주식은 ㉔·㉔ 방법이 아니고 장부가액 자체로 평가할 수 있음. • 최대주주는 20%(중소기업 10%) 가산(법정평가액×120%), 50% 초과 보유 과점주주는 30%(중소기업 15%) 가산(법정평가액×130%) -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단, 2014년까지만)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무상증자 취득주식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주식·출자지분 취득 증가시-자산증가로 보지 않음. 수입인식 안하고 수입배당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음 (주식수만 증가기록하며, 따라서 F/P계상 주당단가는 낮아짐). · 세무상 익금산입 항목은 세무조정하여야 함. (기업회계상 수익인식하지 않으므로) 	<p>법 제16조 : 배당금·분배금의제-익금산입항목</p> <p>익금 : 감자관련차익, 잉여금의 자본전입, 재평가 차액 중 토지평가증(1%분) 재원의 자본전입</p> <p>법인인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무상증자배정시 법인외 다른 주주의 불균등, 비주주 배정이익</p> <p>해산관련차익, 합병관련차익, 분할대가차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분배금의제외(익금산입시점) : 주총 등의 소각, 감자·잉여금 자본전입 등 결의일(등기일 아님),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 자본변동익금불산입항목 : 자본준비금(2년 지난 자본소각익) 재원의 무상증자, 재평가적립금 재원의 무상증자

(3) 유형자산, 부채의 취득원가주의 계상과 평가방법론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유형자산평가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원가=제작원가·매입가액+취득 부대비용가산 · 감가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생산량 비례법 등 합리적 방법 적용 · 감가상각 끝난 자산-폐기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이나 비망가액으로 기재 · 이연자산은 없어짐. · 창업비·개업비 등도 당기비용으로 인식 · 자산취득시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상각방법을 정 	<p>법 제41조 : 취득가액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매입자산 = 매입가액 + 부대비용 · 자가제조·생산·건설 제작원가 + 부대비용 <p>시행령 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방법 : 건축물·무형고정자산→정액법 단일회됨. · 건축물외 비유동자산(기계장치 등) : 정액법 혹은 정률법 선택 · 광업권 등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개발비, 무형자산 등 : 기간균등상각 <p>법 제42조 : 임의평가증·감하허</p>



계정과목 및 평가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하며 계속적용 원칙임(신규취득자산은 동종 기존 유형자산과 같은 상각방법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휴자산도 상각: 일시·단기간 상각비는 제조원가나 판관비로, 장기운휴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 사업연도 중도취득자산은 월할(1월 미만은 1월) 상각하며, 세무상으로도 월할계산액을 손금산입하므로 세무조정사항 발생안됨. ·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가액에서 이후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함. - 해당 자산이 포함된 자산분류전체를 재평가함. - 재평가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감소액은 기타 포괄손익잔액에서 차감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p>라도 평가전 당초 원가대로 반영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25%의 신고내용연수, 계속적용이 원칙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율증가·감소 등 특수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50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변경 시행령 제29조의2: 합병·분할승계자산, 내용연수 50% 넘게 사용한 중고자산은 기준내용연수×50%와 기준연수×100% 중 선택적용가능 · 내용연수 계속 적용이 원칙이지만 변경가능. 일단 변경하면 3년 경과된 후에 변경가능 · 자산임의평가차손은 인정 안됨(단, 재고자산·파손·부패·변질 등은 평가감손금 반영). · 적격합병·분할시 양도·양수법인의 상각방법 승계·적용함.
무형자산평가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원가=제작원가, 매입가격+취득부대비용 · 상각방법=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 방법으로 자산의 사용가능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자산의 취득시점부터 상각아님) · 최대의 상각기간: 20년(단, 독점적·배타적 권리부여된 법령·계약있다면 연장가능) 	<p>법 제41조: 취득가=매입가+부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제조·건설·생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등 합계 · 재평가·법정 평가시는 평가된 금액 · 내용연수: 5년(영업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10년(특허권·어업권·채취권·관리권·이용권 등), 20년(광업권·전화이용권·수도시설관리권), 50년(택사용권)
부채평가기준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 총액으로 공정가치 기재(명목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가액으로 기재 · 장기할부조건 채무에 대해 현재 가치 평가하여 할인금액을 차감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총금액으로 기재함이 원칙) • 금융부채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 • 부채조건 변경시 새로운 금융부채 인식 • 장기금전대차거래 등 현재가치 평가	(시행령 제72조제3항) • 정리계획, 화의 등 기업구조조정, 가치개선(workout)관련 부채의 탕감·감소액, 현재가치감소관련 감액차익은 익금불산입(3년간 익금불산입후 나중 3년간 균등익금환입) : 조특법 제44조
사채 발행 차금	일반회계기준 제6장 • 사채액면가와 발행시 현금유입액과의 차액을 차금으로 계상(사채발행비도 현금유입차액으로 포함 반영) • 장부금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이는 사채상환이익(손실)로 당기손익 처리 • 할인발행 :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발생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 기간에 유효이자율법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사채이자(지급이자)에 가산. • 할증발행 : 사채할증발행차금 : 발행시부터 상환시까지 유효이자율법 적용하여 안분환입하고 사채이자(지급이자)에서 감액하는 순액처리함.	• 회사채발행시 할인액은 회사채액면가의 감액으로 거래후 사채상환기간동안의 안분감소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함. • 할증발행차금도 기간안분하여 환입하되 익금산입하거나 혹은 회사채관련 지급이자금액을 감소시켜 순액처리함. • 사채할인차금상각액은 지급이자임. • 구매대금 할인차금상각액은 지급이자 아니고 일반비용임.
이연법인세차	일반회계기준 제22장 • 법인세비용(=당기손이익×법인세율 등)과 법인세법상 납부할 금액과의 차이액=세무상 일시적 기간차이금액×세율 • 이연법인세차=법인세 계산액>법인세비용 (익금쪽⊕조정이 많은 경우 혹은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된 법인세효과) • 이연법인세대 (제24조제5호) : 법인세비용>법인세 계산액(손금쪽, ⊖조정이 많은 경우 나중에 추가 세금납부) • 중소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세무조정상의 영구차이(permanent difference)는 현재 세금과 미래세금에 영향없으나 시간차이(timing difference)항목은 이연법인세차·대효과가 있음(세금차체는 손금부인항목). •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항목→향후 손금·익금불산입임 : 이연법인세차계정으로 계상후 향후 법인세 덜 내는 효과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항목→향후 익금, 손금불산입 : 이연법인세대계정으로 계상후 향후 세금 더 내는 효과



계정과목 및 평가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유 형 자 산</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건설중인 자산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표시-각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간접법 방법)적용 혹은 유형 자산 합계액에서 일괄차감 기재(총액, 상세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함) · 재평가일의 공정가액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함. · 재평가로 증가된 가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묻어둔 후 최종처분시 꺼내어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재평가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은 폐기 및 최종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p>	<p>법 제23조,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기계 및 장치, 특허권,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동물, 식물 시행령 제24조제5항: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 상각자산, 기타리스는 리스회사 상각자산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 직접감액과 감가상각누계액 계산방법 중 선택 · 감가상각 누계액은 개별자산별 계상,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작성보관 시행령 제32조: 상각범위액 초과액은 부인. 향후 부족시 미계상시 부인액 손금추인됨.</p>
<p>무 형 자 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에서 이연자산 개념은 없고 · 법인세법에서도 이연자산 없애고 무형고정자산으로 변경함.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신제품·신기술개발관련비용으로 개별적 식별기능+미래의 경제적 효익기대 확실한 금액), 독점·배타적 권리 등(창업비 등은 더 이상 영업권이 아니고 당기비용·손금항목임) · 상각액: 당해 자산에서 직접차감(직접법)잔액으로 계상함. · 신주발행비: 기업회계에서 자본조정계정 반영후 잉여금에서 3년간 균등차감, 세무상으로도 손금불산입항목(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하며, 할증발행액 계정금액이 있으면 서로 상계해 나가거나 잉여금에서 감액 반영함)</p>	<p>시행령 제24조·제26조: 무형비유동자산 및 상각범위액 계상 · 개발비(신제품·기술의 연구·개발활동 위한 비경상적 비용 등 미래의 경제효과·이익기대): 제품의 판매·사용가능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 이내 균등상각하여 손금반영(창업비 등은 당기비용·손금항목임) ·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자산기부 후 수익얻는 장부가액):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 손금산입 ·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된 사용기간동안 균등상각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무형자산=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채취권 등, 광업권, 이용권, 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등</p>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감가상각방법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자산 (기계·비품 등) · 건축물 · 무형자산 · 영업권 · 광업용 고정자산 · 광업권 	<p>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및 기타 합리적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p> <p>정액법, 생산량비례법</p> <p>합리적 내용연수내 상각</p> <p>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기타법</p> <p>정액법, 생산량비례법</p>	<p>정률법, 정액법</p> <p>정액법만 적용</p> <p>정액법</p> <p>정액법</p> <p>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p> <p>정액법, 생산량비례법</p>
<p>토지 및 비유동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취득원가 · 취득원가, 이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원가, 제작원가, 취득원가계상 · 취득에 장기간(1년 이상) 소요자산의 차입금지급이자는 원가가산(건설자금이자) · 차입금 일시 예금이자 상계처리 · 장기할부구입시 현금가 기준 계산 <p>※자산재평가로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감소액은 당기 손실로 회계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비유동자산 취득관련 직접 차입금지급이자는 원가산입(토지 매입대금 원본일까지 건설자금이자 계산함) · 일시예입이자는 원본가산이자에서 상계처리함. · 익금산입안된 평가차익은 원가아님. · 장기할부구입시 현금가 추가금액은 수입이자 등으로 반영
<p>일반비유동자산 (업무용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 반영 여부 · 재평가여부 · 자기취득, 금융리스, 운용리스 취득여부 · 자본적·수익적 지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법·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 각 회사별 추정내용연수(탄력 적용) · 총당금의 감액(간접법)방법 기재 · 내용연수연장, 가치의 실질증가지출은 자본적 지출, 나머지는 당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무형자산-정액법 · 건축물의 일반자산-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 광업권-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 내용연수-기준 내용연수의 ±25%하여 신고 · 내용연수연장, 가치증진은 자본적 지출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 300만원 미만이거나 손상부가액의 5% 미만이면 수익적 지출로 기표하여 당기비용 손금처리
<p>자 산 손 상</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제20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급락 등 유형자산의 손상징후시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차액을 손상차손 처리, 이후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초과시 손상차손환입함. 	<p>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제70조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자산의 진부화·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급락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봄.



(4) 부채와 자본계정의 평가와 회계·세무처리 비교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유 동 부 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단기부채성 총당금 등: 1년 내의 것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 미지급배당금(K-IFRS 1010호에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배당선언시 연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로 표시함)	세무상 쟁점없음. • 총매입대가가 취득원가(이자포함) • 구입계약후 이자계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인 경우만 해당이자 당기비용
비 유 동 부 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회사채, 장기차입금, 장기매입채무, 장기부채성 총당금 등: 1년 후의 것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기준초과차입금, 업무무관자산, 부동산투자 관련 지급이자 불산입
자 기 사 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자기사채취득시 관련액면가액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 취득경위주석기재 • 장부가과 취득가 차이: 사채상환이익, 사채상환손실로 하여 당기손익처리함.	• 자기사채도 유가증권, 채권취득으로 봄. • 관련 상환차손익은 당기 손금 및 익금임. • 자기사채관련 지급이자 수입이자는 계산 안하고 상계처리(원천징수의무없음. 자기사채취득일까지는 지급이자임)
부 채 성 총 당 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당기수익에 대응되는 장래 지출확실비용으로 당기수익차감이 합리적인 것→금액 추산하여 부채성총당금 계상 • 퇴직급여총당금, 판매보증총당금 • 연차적 분할사용, 사용시기의 합리적예측 불능시 →전부 고정부채계상 반영함. 그러나 1년내 합리적 분할사용 및 예측금액→유동부채계상 • 퇴직연금총당금 혹은 퇴직급여총당금에서 퇴직연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	법 제29조~39조: 준비금, 총당금 등 • 비영리내국법인의 지급이자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 보험사업자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 보험사업자의 계약자 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퇴직급여총당금의 손금산입(추계액×15%) • 퇴직연금총당금의 손금산입(전액가능→퇴직연금예치금 가입) • 신용보증회사의 구상채권상각총당금의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의 손금산입

계정과목 및 평 가 논 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
	* 수선충당금은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함(기준서 제5호)	
퇴 직 급 여 총 당 금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급여형 : 회계기간에 납부할 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자산·부채인식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금 > 기납부액 : 차액을 부채 인식 - 기여금 < 기납부액 : 미래지급 감소액, 환급분 자산 인식 · 확정급여형 :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전 청산가치로 측정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 - 퇴직후 미지급금 인식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처리 - 퇴직연금운용자산·예치금 등 기업보유로 처리 - F/P상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 표시(자산초과시 투자자산으로 표시) 	<p>법 제33조 : 퇴직급여추계액 - 기존충당금 ≤ ① 1년간 계속근로 총급여 × 5%와 ② 총 퇴직금추계액 × 15% 중 ①과 ②의 적은 금액이 당기손금 한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상의 퇴직금전환금 납부액은 손금산입적액에 가산 ·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 <p>시행령 제44조의2 : 나머지 85%는 퇴직연금의 실제납입으로 손금산입함.</p>
사 채 발 행 차 금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발행 외부납입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 : ⊕이면 사채할증발행차금, ⊖이면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하여 사채액면가에서 차감 혹은 부가형식 기재 · 장부금액과 취득대가와의 차이는 사채상환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할인 발행차금 상각은 사채이자(지급이자)로 손금산입 · 사채할증 발행차금 환입은 지급이자와 상계처리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계산시 지급이자로 봄.
자 본 계 정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제2장 문단15.2 : 자본 : 자산-부채 (자본금 : 보통주·우선주)</p> <p>문단15.3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주식발행가액)</p> <p>문단15.11 : 감자차익(자본금감소액이 주금반환금액보다 크거</p>	<p>자본의 부당고가 현물출자 등 : 자본불입 없는 것으로 봄.</p> <p>법 제16조 :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의 익금불산입</p> <p>법 제17조제1호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모두 자본거래로 익금불산입</p>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나 결손보전액 초과)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처분손실 및 기타) 제2장 문단2.33,2.40 : 이익잉여금·결손금(이익준비금, 기타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잉여금(결손금) 등) 제2장 문단2.38 : 자본조정항목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표시, 그 외는 기타자본조정(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주식배당금,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신주청약증거금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으로 표시함. 제15장 문단15.9 : 신주발행비는 기업회계상도 비용인정 안되고 세무상으로도 손금불산입항목임(주식발행비는 할증발행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감액하며, 할인발행시 할인발행금액에 가산하여 처리함(비용부인, 손금부인)). 제2장 문단2.3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자산재평가차익)</p>	<p>법 제20조제3호 :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신주발행비 합계액은 모두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함. 법 제39조(2001년말 삭제됨) : 토지재평가차익(84년 후토지 등 1% 재평가대상)의 압축기장 충당금방식 기장에 의한 손금산입(법인세법 제18조 제1호단서에 의거 토지재평가차익 자체는 익금산입이므로) 법 제18조 ·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이월익금, 무상수증익 채무면제익 등도 익금불산입 · 자기주식처분손익(소각손익은 과세제외되며, 매각차손익은 손금 및 익금임)</p>

(5) 손익항목의 회계와 세무처리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손익계산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손익계산서]	법 제15조 : 법인의 순자산증가거래는 익금임(순자산증가설)
구분	회계	세무
수익	실현주의	권리확정주의
비용	발생주의	의무확정주의
	<p>모든 수익과 대응 비용의 적정 표시 [작성기준] · 수익과 비용의 발생기간 정당 배분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 미실현수익은 당기손익)</p>	<p>법 제40조 · 익금·손금 귀속연도 : 익금과 손금이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권리·의무 확정주의) · 익금 : 권리확정주의, 손금 : 의무확정주의</p>

계정과목 및 평 가 논 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계산에 불산입함이 원칙. 그러나 비용은 발생주의 기간대응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비용은 발생원천별 명확분류, 관련비용 대응표시 · 수익·비용은 총액주의기재, 직접 상계하거나 차감, 제외안됨(다른 회계기준에서 허용 시에는 상계표시 가능). ·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 ·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 	<p>세무상의 과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익금산입, 손금불산입-손금산입, 익금불산입=세무상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당기과세표준</p> <p>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 취득가액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적용이나 관행을 계속적 적용하면 세법상 특별규정 없는 한 기업회계에 따른다. <p>(기업회계기준,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및 기타 법령상의 회계처리기준) : 총액주의, 수익비용대응, 계속성 원칙 등</p>
매 출 수 익 실 현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의 관련비용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함. ·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실제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 로얄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p>시행령 제68조 :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제품·기타 생산품(상품 등) 판매, 단기할부판매 : 상품 등의 인도일, 이용가능시점 등 ·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의 구입의사 표시일(기한내 거절·반송 없으면 확정되는 조건 : 기간만료일). · 상품 등의 자산(부동산 등) 양도 : 대금청산일, 청산전 소유권 이전등기, 인도 후 상대방 사용수익하면 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함. · 위탁매매 : 수탁자의 위탁자산 매매일 · 장기(1년 이상)할부조건 판매·양도시 - 인도일·대금청산일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함.	<p>원칙임. 그러나 회사결산에 장기 할부조건상 회수금액과 관련 대응 비용의 기간대응 반영했다면 회수 기준 인정하는 특례적용 가능(2회 이상 분할수입이면서+인도일 부터 최종 지급까지가 1년 이상)(즉 원칙은 인도기준, 그러나 회사가 할부회수기준으로 회계반영하면 법인세무도 그대로 따르므로 세무조정 안함) 조기회수해도 인도일 회수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할부관련채권의 현재가치 할인차금계상액은 회수기간동안 환입할 금액을 각사업연도마다 익금산입 					
매출액	<p>일반회계기준 제2장 [매출액의 표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은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 - 환입 - 매출할인(판매장려금도 해당함) : 차감잔액으로 표시 (일정기간 거래수량 ·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 감액하는 것 → 매출에누리로 봄) <p>☞ 판매촉진과 매출증대를 위한 경품 · 상품권 등 제공과 판매촉진비의 회계와 세무처리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주의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매출에누리, 환입재화 · 도달(인도) 전 파손 · 훼손 · 멸실재화가액은 매출과 세표준에 불포함. 환입 · 반품 · 에누리 · 매출할인 · 판매장려금 등의 관계(매출에누리, 환입, 공급후 매출할인은 총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함) 					
불특정다수지급	<p>마케팅방법</p> <p>당첨자에 현금지급 (경품 기타소득)</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51 1189 680 1223">제공자 · 지급자의 회계와 세무</th> <th data-bbox="680 1189 1033 1223">받는자 · 수취자의 회계와 세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51 1223 680 1362"> <p>(총액지급)</p> <p>차) 광고선전비 128,200 (판매촉진비로 손금인정됨)</p> <p>대) 현금예금 100,000 원 천 세 28,200 (순액지급)</p> </td> <td data-bbox="680 1223 1033 1524" rowspan="2"> <p>기타소득으로 총지급액×20%(지방소득세까지 22%)가 원천징수 차감된 후 받음. 광고된 액면금액에서 별도의 세금을 낸 후 당첨금 받는 경우도 있음(개인). 법인은 총지급받는 금액이 잡수입임(단, 세액 1천 원 미만(교부액 5천원 미만)은 소액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로 원천징수 면제 및 과세최저한 5만원).</p> </td> </tr> <tr> <td data-bbox="551 1362 680 1524"> <p>차) 광고선전비 100,000 대) 현금예금 78,000 원 천 세 22,000</p> </td> </tr> </tbody> </table>	제공자 · 지급자의 회계와 세무	받는자 · 수취자의 회계와 세무	<p>(총액지급)</p> <p>차) 광고선전비 128,200 (판매촉진비로 손금인정됨)</p> <p>대) 현금예금 100,000 원 천 세 28,200 (순액지급)</p>	<p>기타소득으로 총지급액×20%(지방소득세까지 22%)가 원천징수 차감된 후 받음. 광고된 액면금액에서 별도의 세금을 낸 후 당첨금 받는 경우도 있음(개인). 법인은 총지급받는 금액이 잡수입임(단, 세액 1천 원 미만(교부액 5천원 미만)은 소액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로 원천징수 면제 및 과세최저한 5만원).</p>	<p>차) 광고선전비 100,000 대) 현금예금 78,000 원 천 세 22,000</p>
	제공자 · 지급자의 회계와 세무	받는자 · 수취자의 회계와 세무					
<p>(총액지급)</p> <p>차) 광고선전비 128,200 (판매촉진비로 손금인정됨)</p> <p>대) 현금예금 100,000 원 천 세 28,200 (순액지급)</p>	<p>기타소득으로 총지급액×20%(지방소득세까지 22%)가 원천징수 차감된 후 받음. 광고된 액면금액에서 별도의 세금을 낸 후 당첨금 받는 경우도 있음(개인). 법인은 총지급받는 금액이 잡수입임(단, 세액 1천 원 미만(교부액 5천원 미만)은 소액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로 원천징수 면제 및 과세최저한 5만원).</p>						
<p>차) 광고선전비 100,000 대) 현금예금 78,000 원 천 세 22,000</p>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마케팅방법	제공자·지급자의 회계와 세무	받는자·수취자의 회계와 세무	
(특정구매고객에게 제공) (특정장려금으로 1인당 3만원까지 는) 매출차감항목 (예누리·할인)	당첨자에게 현금·사은품 지급(광고, 협찬 상품의 정상시세가 기타소득임)	차) 광고선전비 128,200 부가세대급금 10,000 (매입세액공제됨) 대) 저장품(재료) 100,000 원천세 28,200 부가세예수금 10,000 ※단, 구입한 현물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안받으면 매출부가세 과세(예수금)도 안됨.	받는자·수취자의 회계와 세무	현물의 시세(광고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금을 현금으로 내고나서 당첨물건을 인도받거나, 지급회사가 총액화(gross-up)회계처리하며 스스로 세금부담하면 별도 세금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옴(현물 1만원 미만 소액부징수와 5만원은 과세최저한).
	소모성 증여(식사·향응 등)	접대비로 처리하여 한도계산시 부인계상	소비처분가능 재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은 아님(기타소득, 증여세 과세안됨)	
	상품권·기념품·사은품 등 사용가능재화를 별도로 제공(조건없이)	·접대비 처리하며 시부인대상 ·매입세액공제 안되면 부가세도 부과되지 않음. 차) 접대비 110,000 대) 상품(제품) 110,000 ·매입세액공제되는 판촉비는 부가세 과세	사례금으로 본다면 기타소득. 그러나 일반적 제공받으면 기타소득은 아니지만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단, 상속·증여세법 제55조제2항은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제외함→50만원 미만의 현물·상품권·기념품은 과세안됨)	
	구매금액에 비례하는 기증품(판매조건부 제공)	·주된 재화공급조건의 공급원가에 속함(매출원가임) ·접대비는 아니고 사업상 증여이니므로 매출부가세도 과세안됨.	자기물건구매가액의 일정비율 차감 혹은 물건구매가격에 속하는 해당항목의 하나임(과세될 성질이 아님).	
일정기간 실적별 장려금품, 기증품(판매장려금 성격으로 조건부임)	·매출원가는 아니고 일종의 판매관리비임(그러나 접대비는 아님). ·사업상 증여의 일종이니 시가로 부가세는 과세(현금이면 부가세 과세제외), 매입세액공제 안되면 매출부가세 없음. 차) 판매촉진비 110,000 대) 상품제품 110,000 (매입세액 불공제)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당연 구매조건은 아니나 다액구입금액에 대응한 차감조건으로 구입가 감액(-)계정임. ·사업상 증여의 증여세과세도 안되고 기타소득도 아님. ·개인사업자 법인은 구입원가에서 차감(-)처리하거나 잡수입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구성함.		
매출차감항목(예누리·할인)	기업회계상 모두 매출액에서 차감(세무상 매출할인은 손급반영되지만 부가세 과표차감은 아님)	구입금액 차감(외부매입원부자재에서 감액⊖)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마케팅방법	제공자·지급자의 회계와 세무	받는자·수취자의 회계와 세무
	광고선전배포 (직접전달⊕직매장·대 리점 전달)	광고선전비이며, 사업상 증여이니 므로 매출부가세 과세안됨. 차) 광고선전비 100,000 매입부가세 10,000 대) 현금예금 110,000 (미지급)	원칙적으로 재화의 무상수증 으로 증여세 과세이나 현실적 과약안됨(또한 건당 50만원 미달이므로 증여과표공제금액 입).
	임직원선물 (의복은 제외)	차) 급여·상여 110,000 대) 상 품 110,000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하여 정산함이 원칙(소액이면 복리 후생비로 회계처리하기도 하 며, 작업복 등이면 업무원가 이며 과세안됨)
	대가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은 부가세 과표아님.	잡수입으로 하고, 상대방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25% 원천징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제품, 부산물,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이 중요하다면 주석기재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업종별로 구분기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 는 부가세 과표아니고 이자수입 (그렇다고 원천징수하지는 않 음)으로 잡수입처리함. <p>시행령 제68조제4항 : 매출할인 액 : 약정상 지급기일, 혹은 실제지 급일의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 (실제 확정시 대응) : 당초 원인매 출과 개별대응하거나 연도를 일치 시키지는 않음.</p> <p>시행령 제69조</p> <p>① 건설·제조·기타용역·도급공 사·예약매출 등 - 목적물의 인도일에 익금·손 금인식, 용역은 제공완료일</p> <p>② 건설 등 계약기간 1년 이상 : 착수연도부터 인도연도까지 작 업진행률(공사비 누적액/총공 사 예정비)로 익금·손금반영</p>
매출원가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2.48 [매출원가의 계산방법] • 판매업 : 기초상품재고 + 당기 매입 - 기말재고 제조업 : 기초제품재고 + 당기 제조원가 - 기말재고 • 당기매입액 = 총매입액 - 매입 에누리 - 환출 - 매입환인(일 정기간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른 매입액 감액 = 매입에누 리에 포함함) (상품매입소요제비용은 매입 액에 포함함) • 상품·제품의 기타사유(판매·생 산·매입 이외) 증감액과 관세		

계정과목 및 평 가 논 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영 업 손 익	<p>환급금 등의 매출원가 차감. 부가항목은 구분기재함.</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 매비와 관리비의 차감표시</p>	<p>③ 1년 미만 공사도 결산일에 걸리는 것은 작업진행율로 수익·비용계상 가능</p> <p>시행령 제71조 : 임대료 등-임대료지급 약정일 혹은 실제지급일 (미정시)</p> <p>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 : 순자산 감소시키는 모든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관련 발생한 지출손실·비용·통상적 금액 · 양도자산의 장부계상가액(제조원가금액임), 우리사주조합 출연한 자사주식 장부가액 · 인건비, 고정자산수선비, 감가상각비(시가미달 계상차액의 감가비 포함) · 자산의 임차료, 자산의 평가차손 · 차입금이자·제세공과금, 조합·협회비 ·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업무관련 복리후생식비 등)
판 매 비 와 관 리 비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실2.47 판매활동 기업의 관리와 유지관련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 급여(임원급여·급료·임금·제수당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포함 	<p>법 제25조 : 접대비 한도</p> <p>① 총액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 100억 까지×0.2%, 100억 초과 500억까지 0.1%, 500억 초과부터는 0.03%</p> <p>② 건별 접대비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없으면 손금부인 (2009년부터는 건별 1만원 초과 금액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부인)</p>



계정과목 및 평 가 논 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 법인일반경비·접대비관련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과 인정여부			
계정과목 (기준금액 및 불이익)	카드사용 상황	세무상 불이익처리·문제점 및 소득처분과 가산세 불이익 과세문제	
접대비 ①지출건당 1만원 초과(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에 대해 적격지출증 빙 있어야 불이익 없음. ②불이익⇒손금불산 입하며 가산세 2%는 해당안됨. ③매입세액불공제 ④접대비 건당 50 만원 이상 지출에 따른 접대비명세 서 기재·보관의 무는 삭제됨. * 현금영수증도 1만원 초과시 거래자로서 법인명의로만 가능	법 인 (개 별) 카 드	건당 1만원 초과 위장가맹점 전표	접대비 인정되며 일반접대비 손금불산입 계산대상 액 · 전액을 손금산입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손금불산 입함(접대사실 맞는 경우)
		적법가맹점 전표 건당 1만원 까지	· 접대사실 맞으면 손금산입가능접대비에 포함. 접 대사실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실제사 용자 혹은 대표자의 상여처분 등) 회사업무에 사용됨이 분명하면 접대비 인정. 신용카드 드전표 증빙필요없음(위장가맹점카드 원칙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음). 실제 신용카드사용해도 신용카드사 용액 계산범위에는 넣지 않음.
	개 인 카 드	손금불산입 (1만원까지 는 문제없을 듯)	접대비 사실이 있어도 전액 손금불산입. 접대사실 금액은 기타사의유출로 처분하며 개인종합소득으로 이중과세되지는 않음. 그러나 접대사실이 없거나 업 무와 관련이 없다면 손금불산입되면서 해당접대비 사용자의 개인소득처분(임직원은 상여처분, 주주는 배당처분, 기타는 기타소득처분 등)으로 이중과세될 수도 있음.
	거 래 처 경 조 사 비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없어도 접대비범위로 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밀비이고 손금불산입이 원칙 임→따라서 지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손금인 정받음이 현명함. 건당 20만원 초과액부터는 전액 손금불산입
일반경비 ①지출건당 3만원 초과에 대해 지출 증빙이 있어야 불 이익 없음. ② 불이익⇒가산세 2%이며 손금불산 입은 해당안됨. ③매입세액공제	법 인 (개 인 카 드 등 모 두 통 용)	법인부담비용 인정부분	
		건당 3만원 초과 건당 3만원 까지	일반비용인정 손금산입. 위장가맹점 전표이면 가산 세 2% 부담 신용카드요건 없음. 위장가맹점전표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그러나 법인의 업무비용사실이 아니 라면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임직원 상여·주주배당 소득 등)됨.
	건당 3만원 초과	법인부담비용 아닌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므로 손금불산입되고 사용 자의 소득처분(상여·배당 등)사업관련 경비로 반 영안했다면 가산세 2%도 해당안됨.	
	위 장 가 맹 점 전 표		손금불산입, 세무상 손금아니므로 건당 3만원 초과 에 대해서도 가산세 2%는 없음.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계정과목 (기준금액 및 불이익)	카드사용 상황	세무상 불이익처리·문제점 및 소득처분과 가산세 불이익 과세문제
		건당 3만원까지	역시 손금불산입이나 소득처분 및 가산세 2%는 법인사업거래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해당안됨.
	임직원의 경조사비 : 사회통념금액(건당 20만원)은 손금산입 소득처 분안함. 통상 초과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손금반영할 수 있으 나 연발장산, 소득 등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될 수도 있음. 재화·용역공급이 아니므로 건당 20만원 넘으면 건당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아예 안되며, 대신에 2% 가산세는 적용안됨.		
판 매 비 와 관 리 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재방법] · 기업종류규모에 따라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기재(특성에 맞 게 변화가능) · 주식매입선택권부여 관련 형 성된 주식이가격의 매년별 안분계산 금액은 (차)급여, (대)주식매 입선택권(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반영함. · 퇴직급여충당금부채환입· 판 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 충당금환입 등은 부(-)의 금 액으로 표시		법 제24조 · 기부금한도 : 법정기부 손금(가치 분소득×50%) + 지정기부금(≤ (소득-결손)×10%까지) 제26조 :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있음. · 이익처분 상여금은 손금부인· 지급기준초과 임원상여금 · 지배주주임직원의 동일지급 초 과 보수 시행령 제19조 : 판매상품에 대한 원금매입가와 부대비용은 전액손 비(매입에누리액, 매입할인금액은 매출원가차감·비용차감 혹은 잡 수익으로 익금산입) (D/A 수입자재이자, 유산스이자 등 지급이자는 금융비용으로 당기 손금 가능)
자 본 적 지 출 수 익 적 지 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 분류 기준 · 자본적 지출(고정자산·계상 후 이연상각) - 내용연수연장, 가치의 실질 적 증가지출 · 수익적 지출(당기원가·비용· 판관비 처리) - 원상회복·능률유지·지출		시행령 제31조 : 즉시상각의제, 자 본적·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내용연수연장, 자 산가치 현실적 증가(본래 용도 변경제조,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 빌딩 등 피난시설, 멸실· 훼손 무가치자산의 복구)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영업외손익</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실2.4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임대료·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지분법이익·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유형자산처분이익·사채상환이익·법인세환급액 등을 포함함(실제배당처분확정일(이익잉여금의 무상주전입이나 재평가적립의 무상주전입 등은 이익 아님: 나중에 매각할 때 처분손익인식함)). ·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기부금·지분법손실·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유형자산처분손실·사채상환손실·법인세추납액 등을 포함함. ·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함. ·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적 지출: 경상적 수선기능유지, 정규발생 · 개별 자산별 수선비 300만원 미만, 해당자산 직전 자산순잔액(취득가-상각누계액)의 5% 미달, 3년마다 주기적 수선 · 취득가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대량보유자산, 개시, 확장 취득자산은 제외)도 즉시 상각손금 가능 · 수입이자·금융기관은 현금주의 적용 · 배당금수입: 현금배당수입+의제배당(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등 잔여재산초과액, 잉여금의 무상주전입 등은 익금산입), 그러나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전입은 익금산입 안됨. 일반상장법인, 기관투자가 배당수입 30% 익금불산입(의제배당과세분의 원가는 액면가, 과세안된 무상주취득원가는 0임) · 지주회사배당액 익금불산입 (100% 혹은 80%) · 일반회사수입배당액 익금불산입 (50% 혹은 30%) · 자산평가증: 임의평가증차익은 익금불산입(제18조제1호), 취득원가 계상못함. · 수증익·면제익: 익금산입사항, 전기이월결손금과의 상계보전충당액은 익금불산입(제18조제8호) · 보험차익: 보험차익은 익금, 보험차익으로 구입한 재산의 일시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익금에 손금대응시킴.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 특별이익 등 : 이미 과세된 사항 등과 과오납 환급세액과 관련이 자 등은 익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기부금,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1조~제27조) 시행령 제70조 : 이자수익 : 실제 권리 귀속일에 익금
환 차 손 익 거래	제23장 : 외환차손익 · 외화자산회수·외화부채상환 관련 차손익(모두 당연도 손익사항) · 기존 환산차·환산대는 전기 이월잉여금계정에서 차가감함.	시행령 제76조 : ① 평가환율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한국은행) ②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 모두 당기손금·익금(은행업과 일반법인도 인정) ③ 상환하거나 상환받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기존 장부상 기장액과의 차이·차손도 모두 당기 손금·익금사항임. ④ 단 98년말까지 이미 계상된 환율조정차와 환율조정대는 기존의 기간안분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의 세무조정내용대로 계속됨. 손금산입(기타 잉여금감액), 손금불산입(유보)처리 후 향후 손금산입(△유보)로 대응조정해나감
환 산 손 익 평 가	제23장 :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산손익임(모두 당연도 손익사항).	법 제18조제8호 : 수증익·채무면제익은 순자산증가로 익금산입원칙. 그러나 이월결손금보전충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함(기업회계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해도 세무조정계산서의 이월결손금과 차감 기재하면 익금불산입처리됨). 그러나 채무면제익·자산수증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차감상계하지 않는다면 익금산입함.
기 타 특 별 항 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손익] · 중단사업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 사업중단 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이 해당 · 법인세효과 차감한 후 순액으로 보고,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	법 제18조제8호 : 수증익·채무면제익은 순자산증가로 익금산입원칙. 그러나 이월결손금보전충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함(기업회계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해도 세무조정계산서의 이월결손금과 차감 기재하면 익금불산입처리됨). 그러나 채무면제익·자산수증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차감상계하지 않는다면 익금산입함.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법 인 세 계 정</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임. · 계속사업손익 관련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중단사업손익관련 법인세비용은 해당손익에 직접 반영한 후 법인세비용 반영후 금액으로 기재함. ·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 차이에 따른 일시적 차이를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p>문단22.56 : 손익계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업손익 관련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차감 기재하고, 중단사업손익 관련 법인세비용은 손익에 직접 반영후 손익 기재함. <p>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76 [당기순손익의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내용을 주식으로 기재) <p>기업회계기준서 제26호 문단 26.4, 26.29 [주당 순손익 등의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계속사업 손익과 주당 순손익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p>법 제38조 : 보험차익 재원으로 당연도까지 비유동자산취득·개량 투자액에 대해 일시상각증당금 방법으로 전액 손금산입후 향후 일반 감가상각비와 서서히 대체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10px 0;">세무조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익금·손금관련영향의 이연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사항 (차) 이연법인세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잉여금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 (차) 잉여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이연법인세대 ×× ※ 당연도 세무조정사항의 이연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금산입 유보사항→나중 익금불산입 (차) 법인세비용 80 (대) 미지급법인세 100 이연법인세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산입유보→나중 손금불산입 (차) 법인세비용 100 (대) 미지급법인세 80 이연법인세대 20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표시하고 그 산출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함.</p> <p>문단2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사업손익이 있는 경우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을 주석으로 공시함. 	

(6) 취득원가주의, 명목가치, 액면가액이 아닌 회계처리 분야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채권·채무 현재가치평가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차이가 크거나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연불조건매매거래·장기금전대차거래 등(자산·부채 발생시나 계약조건 변경시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금액이나 수취금액을 평가함) 현재가치 = 채권미래수취액, 채무미래지급할 총액 →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반영함. 현재가치할인이자율 = 당해 거래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 계산 어렵거나, 관련시장의 동종유사채권·채무의 ② 동종시장이자율과 차이가 크면 동종시장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율 적용함. 계산 어려우면 기업의 차입이자율로 ③ 가중평균을 적용함) 채권·채무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과목으로 하여 채권·채무 명목 	<p>시행령 제7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 외부구입 : 매입가액 + 취득세 + 부대비용 자기제조생산·건설 :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공과금 + 설치비 + 부대비용 (생산자 이익은 가산하지 않음) 기타의 취득(현물출자·수증·점유취득) :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장기할부조건취득 등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평가적용. 매입가액 + 취득세 등 + 부대비용 -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할부조건매입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과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계상액 : 일반지급이자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니며 지급이자관련 이자소득 원천징수·지급조서 등의 적용대상도 아님. 즉, 순현재가치만 취득원가가 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하며 초과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되어 총지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상됨. 기간에 따른 할인차금상각액은 일반지급이자비용과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가액에서 차감방법으로 기재 (적용이자율, 기간, 회계처리 방법은 주석기재)</p> <p>차) 기계장치 700 현재가치 300→(혹은 -300) 할인차금 (으로 대변기장) 대) 장기미지급금 1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 율법 적용하여 감가상각 및 분할환입, 감가상각비는 이자 비용으로, 분할환입액은 이자 수익과목으로 계상함. <p>차) 지급이자 100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거래 예시: 장기연불 조건매매거래, 국공채의 유효 이자율법평가, 사채의 실체가 격 결정, 전환권대가·신주인 수권대가평가·리스거래 	<p>같은 개념으로 손익계산서에 반 영하는데 기업회계기준상의 현 재가치개념을 세법이 받아들인 것임. 그러나 구입대가의 일종 이므로 일반지급이자의 세무상 불이익 적용은 하지 않음.</p>
채 권 · 채 무 재 조 정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채무의 원금·이자율· 차입·기간·계약조건이 채권 자에 불리하게 변경·재조정 되어 채권·채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차이가 중요하면 현 재가치로 평가-장부가와 현 재가치와 차액에 대해 평가감 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평가이익은 채무면제이익의 당기손익 항목처리 ·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대손상각비 처리시 채권에 이 미 대손충당금이 설정·계상 되었다면 동차액을 충당금과 먼저 상계후 남는 잔액만 대 손상각비 처리함. · 재조정사유: 회사정리절차개 	<p>시행령 제62조제5항 관련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할부조건 자산판매·양도거 래는 현재가치 평가하여 취득가 액조정함. · 채권·채무 재조정사유가 자체 권리 의무확정개념에 따라 자산 실제감액분은 손금, 실제증액분 은 익금임. · 채권·채무 재조정 사유시 채권 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차액인 현재가치 평가감금액을 회계상 대손금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 하며, 손금산입후 기업회계상 환입시 익금산입함. · 기업회계상 대손금처리하면 세 무조정 사항없음.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시, 화의절차개시, 거래당사자간 합의 등의 거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조정시의 할인율: 유효이자율, 그래도 없으면→동종 시장이자율, 없으면→기업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함. · 채권·채무 장부가-현재가치 평가금액→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 <p>차) 기존 채무금액 1000 (혹은 -400) 대) 신규 채무금액 600 현재가치할인차금 400 (적용이자율, 재조정변경원금, 이자율·기간 등 주식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향후 유효이자율로 상각이자비용 처리·환입 당기이자수입 처리함. <p>차) 현재가치할인차금 200 대) 이자수입 200</p>	
<p>외 화 자 산 부 채 평 가 환 산 (당기손익 혹은 이연손익)</p>	<p>제23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성외화자산·부채→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정한 환율(일반적으로 기준율)로 평가·환산금액은 F/P금액으로 함(화폐성항목: 현금예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일정화폐로 고정되는 금액).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은 외화환산손실·외화환산이익계정으로 당기손익 처리함(외화자산·부채내용·환산기준 환산손익내용은 주식기재).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현금·현금등가물·매출채권·매입채무 등 화폐가치 변동과 상 	<p>시행령 제7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성 외화항목은 F/P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한국은행)로 평가함. ·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의 장단기 화폐성자산, 화폐성부채평가손익은 당기손익 · 외화채권·채무거래·상환 손익도 당기손금·익금임. ·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통화스왑, 통화선도에 한함)도 평가손익을 인정함. · 비화폐성 자산·부채는 평가손익 등 언급없음(원조환율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세무상 비



계정과목 및 평 가 논 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관없이 자산부채금액이 계약 등으로 일정액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부채를 말함(유가증권 등으로 화폐성, 비화폐성의 2개 성격이 모두 있는 자산·부채는 보유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함: 단기보유-화폐성, 장기는 비화폐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원칙적으로 당해 자산 취득시 부채부담당시의 적절한 환율(원초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F/P가액으로 함(당초 계상가액대로 놔둠). 	<p>용·수익 아니라는 뜻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화표시재무제표환산차손익도 당연도 재무제표 환산 반영시 손금·익금산입 98년까지 장기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기업회계상 당기손익반영 안하고 이연자산·부채로 이연할 수 있는바,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처리대로 당기손금·익금안하고 이연자산·부채(환율조정차·대) 반영후 기간안분 감가상각함(세법상 종전 환율조정차·대는 상환기간까지 균등안분하여 손금·익금산입함). <p>(기업회계상 99년에 전액(차)잉여금 감액, (대)환율조정차 하였다면 당기손익에 영향없으므로 세무조정 안해도 되나 이연금액의 분할손금산입을 위해 손금불산입(유보), 익금불산입(기타)로 조정하여 미래의 세무조정과 연결시킬 수 있음)</p>
<p>기 능 통 화 등 환 율 변 동 효 과</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K-IFRS 제102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통화로 외화거래 최초 인식시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의 환율을 외화금액에 기재(각 실체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폐성 외화: 기말환율 -비화폐성 외화: 거래일환율 -공정가치 측정 비화폐성 외화: 공정가치 결정일 환율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해당국가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 가능 	<p>법인세법 제53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화의 기능통화 채택시 ①기능통화(외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②원화를 기능통화로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③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원화의 기능통화 선택시 기능통화의 변경·합병 등의 사유 외엔 과세표준 계산방법 변경 불가 기능통화 변경시 과세표준계산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시 외환차익·화폐성 항목의 환산차익은 당기손익 인식. 단,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시 제외하고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연결재무제표 등 표시통화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 : 마감환율 - 손익계산서 : 거래일환율 - 환산차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p>변경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자산 등의 장부가액\ominus(변경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일 환율적용하여 변경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액) 익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응 손금산입함.</p>												
<p>해외지점법인의 외화환산</p>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해외사업의 경우도 상가원칙 적용 : 원칙(화폐성 외 화자산 부채 : 당기손익, 비화폐성은 인식방법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 - 해외사업의 해외지점, 해외소재, 지분법적용 대상회사(지분 20% 이상 보유)의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결정가능) · 임의선택 :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완전 독립된 해외사업. 지분법 적용회사 등 : 선택 ①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F/P일) 현재환율 ②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적용 ③ 손익항목은 거래발생 당시 환율이나 당회계연도 평균환율로 일괄 환산가능 <p>→ 발생환산손익 : 가감상계처리하여 순차액을 해외사업 환산차·해외사업환산대 계정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함(내용은 주석기재)</p> <p>→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항목)는 향후(차기부터) 발생</p>	<p>외화표시 재무제표 원화환산 및 환산차손익의 처리방법 비교표</p> <table border="1" data-bbox="695 708 1020 1538"> <thead> <tr> <th data-bbox="695 708 747 800">구분</th> <th data-bbox="747 708 936 800">제1방법 (화폐성·비화폐성)</th> <th data-bbox="936 708 1020 800">제2방법 (재무상태표 현행환율법)</th> <th data-bbox="1020 708 1027 800">제3방법 (재무제표환율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95 800 747 1315">① 환산 방법</td> <td data-bbox="747 800 936 1315"> <p>화폐성 자산·부채(당좌자산, 채권 및 채무)는 종료일 현행환율로 환산하며, 기타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은 취득일·발생일·대체일 등 역사적 환율로 환산</p> </td> <td data-bbox="936 800 1020 1315"> <p>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로, 손익계산서 항목은 평균기준환율로 환산함.</p> </td> <td data-bbox="1020 800 1027 1315"> <p>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환산</p> </td> </tr> <tr> <td data-bbox="695 1315 747 1538">② 환산 차손익의 처리</td> <td data-bbox="747 1315 936 1538"> <p>외화의 원화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p> </td> <td data-bbox="936 1315 1020 1538"> <p>외화의 원화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F/P, I/S상의 차액 등)은</p> </td> <td data-bbox="1020 1315 1027 1538"> <p>좌 등</p> </td> </tr> </tbody> </table>	구분	제1방법 (화폐성·비화폐성)	제2방법 (재무상태표 현행환율법)	제3방법 (재무제표환율법)	① 환산 방법	<p>화폐성 자산·부채(당좌자산, 채권 및 채무)는 종료일 현행환율로 환산하며, 기타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은 취득일·발생일·대체일 등 역사적 환율로 환산</p>	<p>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로, 손익계산서 항목은 평균기준환율로 환산함.</p>	<p>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환산</p>	② 환산 차손익의 처리	<p>외화의 원화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p>	<p>외화의 원화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F/P, I/S상의 차액 등)은</p>	<p>좌 등</p>
구분	제1방법 (화폐성·비화폐성)	제2방법 (재무상태표 현행환율법)	제3방법 (재무제표환율법)											
① 환산 방법	<p>화폐성 자산·부채(당좌자산, 채권 및 채무)는 종료일 현행환율로 환산하며, 기타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은 취득일·발생일·대체일 등 역사적 환율로 환산</p>	<p>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로, 손익계산서 항목은 평균기준환율로 환산함.</p>	<p>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환산</p>											
② 환산 차손익의 처리	<p>외화의 원화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p>	<p>외화의 원화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F/P, I/S상의 차액 등)은</p>	<p>좌 등</p>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p>하는 해외사업환산차·대외계속상계 표시하다가, 관련지점·사업소·지분법 적용대상회사가 청산·폐쇄·매각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회계처리함.</p>	구분	제1방법 (화폐성·비화폐성)	제2방법 (재무상태표 현행환율법)	제3방법 (재무상태표 환율법)
			각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 입하지 않 음.	<p>법인이 상기의 세 방법 중 하나를 계속 적용하지 않거나 일단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면 제3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하나, 당해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3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제3방법으로 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p>	

(7) 기타 특별계정항목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파 생 상 품	<p>제6장 제3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 발생된 권리·의무-자산·부채계상(on-Balance 효과), 시가, 공정가액대로 재무상태표 계상 · 발생손익은 발생시점의 당기손익인식 (위험회피목적거래는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만 선택가능)←비파생금융상품도 포함 · 파생상품거래목적, 내역주식기재, 위험회피목적이면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은행업)의 화폐성 외 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통화스왑, 통화선도에 한함)도 평가손익을 인정함(일반법인은 불인정하였으나 2011년부터 평가손익 인식 가능함).

계정과목 및 평 가 논 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위험, 대상범위, 회계처리, 이 연된 손익금액 기재함. · 파생상품 자산·부채(평가손익 포함)는 총액표시(상계 안함)	
국 고 보 조 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받아 자산취득시→취득자산에서 차 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보 조금 먼저 받은 경우 잠정운 용자산의 감액으로 반영, 당기 이익·수익으로 보지 않음. 차) 기계장치 100 일시상각비 100 대) 현 금 100 기계장치일시상각충당금 100 (기계장치계정에서 감액시키 며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음) 즉 재무상태표 표기 차) 기계장치 100 총액주의로 기계장치충당금 -100 +, -기특함 차 감 잔 액 0 ·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함. (감가상각비와 대응해 가면서 서서히 수익인식) 차) 일반감가상각비 20 기계장치일시상각충당금 2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 일반감가상각비 20 (혹은 일시상각충당금 환입) (서서히 수익인식) · 당해자산 중도처분시 잔액을 처분손익에 최종 가감하여 세 무효과 동일하게 함. · 기계장치100 - 감가상각누계 액 20=80원 · 처분액 : 70원 : 처분손실 = 10 (=80-70)	법 제36조 : 국고보조금 취득자산 의 일시손금대응 ·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일단 익 금산입 · 해당자산 취득금액에 대해 일시 상각비 계상하여 수익·비용 대 응시킨 후 감가상각비와 상계시 켜 나감(압축기장충당금, 일시 상각충당금). · 즉 국고보조금을 기업회계상 이 익으로 잡지 않았어도 익금산입 하고 기타로 반영한 후 해당 동 액을 세무조정계산상 일시상각 비로 전액 손금산입(유보)하여 대응시킴. · 향후 해당자산의 일반감가상각 비 계상액을 줄여주면서 손금산 입(-)유보된 감가상각비금액을 서서히 손금부인시켜 나감. 국고보조금 등을 금전 외의 현 물자산으로 받아 사용한 경우도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사용으 로 봄. 법 제37조 : 공사부담금 취득 비 유동자산의 일시손금산입대응 법 제38조 : 보험차익 취득 비유 동자산의 손금산입대응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차) 현 금 70 대) 기계장치 100 누계액 20 <u>처분손익 70</u> 기계장치 80 (=총당금잔액 80 총당금 -손실 10) · 특정비용 보전목적의 보조금 은 서로 상계처리	
자 본 조 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 행·증자연도로부터 3년간 균 등상각하되 당기비용 아니고 잉여금 차감함. 납입시 : 차) 현 금 70 주식할인발행차금 30 대) 자 본 금 100 · 3년간 매기균등액 상각, 잉여 금부족, 결손시는 차년도 이 월상각 차) 이익잉여금 10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10 · 배당건설이자는 연 6분(6%) 이상 배당시 초과액을 상각하 면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함. ·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 시 관련 자본계정에 대체함.	법 제20조 : 자본거래항목의 손금 불산입 · 잉여금처분 손비계상액, 건설이 자배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전 환사채성과금, 우리사주조합통 한 자기주식성과금 등은 손금산 입됨) 법 제17조 : 자본거래 수익항목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 (고정자산임의평가차익, 재평가차 익 모두 익금불산입사항임 : 토지 는 예외) 법 제18조 :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및 기타임의환입금은 익금불산입. 그러나 재평가·보통법 및 세무상 평가관련 평가증된 금액중 법정평 가로 익금산입된 건물·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가능(익금산입 안되 는 임의평가증은 취득원가도 아니 며 감가상각도 안됨)
회 계 변 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 회계정책변경의 효과는 소급 적용하여 누적효과를 전기이 월잉여금에 반영하며 재무제 표를 재작성함. ·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전진적으 로 처리하여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함.	시행령 제27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상각방법 변경승인요건 : 합병· 타사업인수·승계, 외국인지분 20% 이상 인수보유, 해외시장 변동 · 변경할 사업연도의 3개월전(9. 30일)까지 신청 · 변경된 연도부터 손금·익금적 용, 임의변경시 종전방법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함. 전기와 이전의 오류 발견내용은 당기 영업외손익 중 전기 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함. 중대한 과거의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며 관련계정 및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p>시행령 제74조제3항 :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 평가방법 변경가능 : 변경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전 3개월이 되는 날(9월 30일)까지 변경신청 변경연도부터 해당 방법대로 손금·익금반영</p>
우 발 상 황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P일 현재 순자산감소가 확실·합리적 추정가능금액→손실을 재무제표에 비용반영, 내용주석기재 F/P일 현재 순자산감소는 확실하나 합리적 추정불가능 순자산감소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우발상황내용, 우발상황에 따른 재무적 영향금액, 추정근단사유를 주석으로만 기재(재무제표상 손실반영 안함) 우발이득발생상황-확정일까지는 재무제표에 반영안함(주석기재도 안함). (우발이득 발생가능성 확실+합리적 추정가능→우발상황을 주석 기재) 	<p>법 제29조·제30조·제31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의무확정주의 개념에 의거 확정된 채무비용·계산가능금액만 손금산입 특정업종(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등) 손해배상충당금 손금산입 규정도 삭제됨.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계정 있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법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보험업), 계약자배당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15%), 구상채권상각충당금(신용보증사업) 등의 손금산입 규정 등이 열거규정되어 있음. 법 제32조의 증권거래준비금은 삭제됨.
대 차 대 조 표 일 후 발 생 사 건	<p>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P일후 발생사건이 기존 F/P사실에 추가적인 증거로 재무제표 추정치에 영향을 주면→사건영향을 적절히 자산·부채 반영 재무제표 수정(추정액은 손실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손금·익금 아님.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반영할 사항 : 가치하락, 소송확정, 구입·매각가확정, 이익분배, 상여금 지급확정, 회계오류변경 · F/P일후 발생사건이 기존 F/P사실에 관련없으면→자산·부채 수정안함. 이후 자산부채에 비정상적 변동있으면 주석으로 기재 가능 	

(8) 중요자산에 대한 기업회계·세무회계 핵심사항 비교요약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요약

평가방법			
평가대상자산	신고시 : 신고한 방법	무신고시	신고방법 이외방법평가시, 변경신고없이 방법 변동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포함)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 · 저가법 : 원가법 또는 저가법(낮은 시가로만 평가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 개별법 · 기타 모든 자산 : 선입선출법 · 유가증권 : 총평균법 	선입선출법(부동산은 개별법) 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법인의 상황·경우	법인계상금액 [㉠]	선입선출법금액 [㉡]	신고방법금액 [㉢]	적용
최초법인세신고기한내 적법신고·적법변경신고				㉠
무신고				㉡
신고 이외 방법 평가		㉡크다 ≥ 작다㉢		㉡
신고 이외 방법 평가		㉡작다 < 크다㉢		㉢
적법변경신고없이 평가 방법 변경한 경우		㉡크다 ≥ 작다㉢		㉡
적법변경신고없이 평가 방법 변경한 경우		㉡작다 < 크다㉢		㉢

구 분	세법상의 기준	기 업 회 계 기 준
저가법 적용의 요건	원가법 신고에 한함	순실현 가능금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시가의 정의	재매입 정상소요가액	순실현 가능가액(=추정판매가-추정비용)
시가의 포함기간	결산일 현재 1일 가격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증가
손익의 반영방법	손금산입(회계 차감되었으면 조정안함)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유가증권평가방법 비교

기업회계상으로는 유가증권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평가손익의 회계 및 세무처리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기업회계상의 평가방법	세무상의 평가방법	
당좌자산 중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중 일시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공정가액 시가법 적용(연말), 종목별	원가법의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평가손익 불인정	
재고자산 중 상품유가증권	금융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 등(매매목적)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공정가액 시가법 적용	원가법의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평가손익 불인정	
단기 매매 증권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원가법의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증권			비상장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투자자산 중 투자유가증권 (매도가능증권)	투자유가증권, 출자금, 관계회사주식, 관계회사사채, 관계회사출자금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 시가법적용(영향력 주식은 지분법 평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 지분법 평가손익은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됨. 단,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등은 시가법 평가하며 손익을 손금익금반영)	
기타의유가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매목적이 아닌 것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기업회계상 시가적용·세무상 원가적용한 경우의 손익반영과 세무조정

유가증권에 대해 기업회계는 원가반영후 결산기말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실 혹은 평가이익을 당기손익계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을 무조건 원가법으로만 계산하므로 기업회계상의 평가손실은 손금부인되고 평가이익은 익금부인되어 나중에 실제 처분될 때까지 유보·이연된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구 분	법 인 세 법	기 업 회 계 기 준
적 용 대 상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 원가법 적용(총평균법, 이동평균법·개별법) *투자회사 등 시가법 적용	모든 유가증권(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단기매매 유가증권, 재고자산 중 상품유가증권, 투자자산 중 시장성있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 및 출자금 등의 매도가능증권)에 시가법 적용
적 용 요 건	창업중소기업 중 부도난 경우나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시 시가반영가능	단기매매증권은 무조건 감액함. 단,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주식은 지분법 적용 평가금액을 계상
시 가 의 정 의	없 음.	시가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 혹은 다음 거래일 종가
적 용 방 법	총액기준으로 원가반영	총액기준으로 시가반영
손 익 반 영	평가손실의 손금부인, 평가이익의 익금부인	평가손익의 당기반영

(9) 각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처리 요약비교

재무상태표 중 기타 부채와 자본계정의 회계·세무차이

계정과목	평가대상·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법인세법·소득세법)
단기차입금	이자의 계상 여부	발생주의로 지급이자계상	발생주의로 지급이자계상
기타의 단기부채		발생된 대로 계상평가	발생된 대로 평가

계정과목	평가대상· 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법인세법·소득세법)
이연법인세대	미지급법인세계정과상쇄됨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향후의 법인세부담을 줄이는 계정	자산·부채계상에 관계없이 당연도 과세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과의 차이금액이 이연법인세차(대)입.
회사채	이자지급계상방법,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발생주의로 이자계상,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 전환권조정계정, 신주인수권조정계정 등은 발행시부터 상환시까지 유효이자율법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사채이자에 가감한다.	발생주의로 이자손금처리, 사채원금과 할인차금은 기간에 따라 지급이자로 보며, 할증차금은 지급이자(사채이자)를 순액으로 줄여나간다. 차금이자 는 지급명세서 대상아님.
장기차입금	지급이자의 계상여부	발생주의로 계상	발생주의로 계상
장기매입채무	현재가치할인차금	현재가치 평가하여 관련차금을 뺀 금액(현금가)으로 부채계상하며 차금은 기간동안 지급이자 등으로 상각계산함.	현재가치 할인하여 평가 반영하고 지급이자로 상각계상
부채성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전임직원 일시퇴직시 지급할 총금액의 설정	1년간 계속 근무임직원 총급여의 5%와 퇴직급여추계액×15% 계산금액과 기존금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이 비용인정
	퇴직연금	금융회사에의 퇴직연금 분담금 : 예금이면서 비용처리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부족분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시 비용인정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합리적 추정소요금액 비용인정	신용보증사업자 : 신용보증잔액의 1%
	판매보증충당금	판매후 사후지원 예상액 추정원가반영가능	비용인정 안함.
	공사보증충당금	하자보수 A/S를 위한 비용	규정없음. 비용인정안함.
	수선충당금	감가상각대상자산에 자본적지출로 가산함	없음. 손금산입 안됨.



재무상태표 중 자본의 회계·세무차이

계정과목	평가대상· 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세무처리(법인세법·소득세법)
자본금	실질자본 여부	자본충실의 원칙, 가공자본은 계정과목금액에서 삭제	가공자본은 자본금계정으로 보 지 않고 주주에 대한 배당처리
주식발행 초과금 감 자·합병 차익	실질 불입 여부	자본거래로 이익이 아님. 자 산수증익, 채무면제익도 이익 아님.	익금불산입(이익이 아님) 결손보전목적의 자산수증익 등만 익금불산입함.
재평가 적립금	자산재평가 법 준수여부	임의평가증이라도 이익아님.	임의평가증은 인정안되나 법정 평가증은 익금임. 자산재평가법 에 의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이익 준비금	적법계상여 부(상법 제 458조)	이익배당액의 10%까지 적립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 지)	좌 동
재무구조 개선적립 금(2007. 12. 28 삭제)	상장법인에 계만 해당 (기업자율에 의해 적립)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이 30%에 될 때까지 적 립(고정 자산 처분 이익의 50%+당기순익×10%)	좌동, 손금불산입, 잉여금처분 사항임.
임의적립 금(조세특 례제한법 등)	연구·인력 개발준비금	임의적립금으로 봄, 회계사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잉여금 처분사항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주지 않음(비용으로 계 상못함). 감사 대상법인이 아 니면 부채 및 비용계상 반영 가능함.	매출액·수입금액의 3% 한도 로 손금산입
기타의 임의 적립금	사업확장적 립금, 배당 평균적립금, 임원상여적 립금 등	잉여금 처분사항, 비용아님	잉여금처분사항, 손금불산입
자본조정 계정	자기주식	자본금에서 -표시 매각손익은 잉여금의 +, -수정	유가증권으로 기록, 임의취득 자기주식손익은 익금·손금, 합병시 자기주식 관련 손익은 익금·손금아님.
	기타의 항목	자본금에서 +, 혹은 -표시	관련손익은 당기익금·손금임.

원가·비용·손실 등의 회계·세무차이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 판매촉진경비의 비용인정범위와 손익구분 표시방법	· 매출에누리과 매출환입·매출환인-매출액에서 직접 감액하여 순매출액 표시 · 판매장려금·경품-판매비로 처리 · 매출환인-거래대금의 기일 전 회수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등 혜택인데 매출수익에서 감액함.	· 좌동,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부가세과표상에서도 세금계산서 제외항목(순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 판매장려금받은 것은 익금산입(영업외수익 혹은 매입원가에서 감액)																					
· 매입원가, 매출원가, 제조원가 등	· 취득·매입의 실제원가(매입에누리, 환출 등은 제외), 판매장려금 감액 · 정규원가 이외의 증감사항도 매입원가에서 가감	좌동(매입, 제작, 생산원가와 부대비용)																					
· 인건비, 노무비	(기업회계기준상) 대부분 제조원가나 판매비·관리비 비용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수령자</th> <th>세법상규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봉급적 성질 (급여·보수·임금) </td> <td>사 용 인</td> <td>손금산입</td> </tr> <tr> <td>상 근 임 원</td> <td>손금산입</td> </tr> <tr> <td>비 상 근 임 원</td> <td>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td> </tr> <tr> <td>노 무 출 자 사 원</td> <td>손금불산입</td> </tr> <tr> <td></td> <td>신 용 출 자 사 원</td> <td>손금산입</td> </tr> <tr> <td rowspan="3"> 상여금적 성질 (특별상여) </td> <td>사 용 인</td> <td>범위관계없이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이 원칙이지만 노사협의된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당결산기이익금(잉여금) 감액으로 회계반영해도 당결산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가능함)</td> </tr> <tr> <td>비 출 자 임 원</td> <td>지급기준내만 손금산입(이익처분상여금과 주총의 상여, 기준·정관 기준초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td> </tr> <tr> <td>출 자 임 원</td> <td>·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내의 상여금(손금산입), 초과상여 등 위장배당금은 손금불</td> </tr> </tbody> </table>	구분	수령자	세법상규정	봉급적 성질 (급여·보수·임금)	사 용 인	손금산입	상 근 임 원	손금산입	비 상 근 임 원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노 무 출 자 사 원	손금불산입		신 용 출 자 사 원	손금산입	상여금적 성질 (특별상여)	사 용 인	범위관계없이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이 원칙이지만 노사협의된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당결산기이익금(잉여금) 감액으로 회계반영해도 당결산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가능함)	비 출 자 임 원	지급기준내만 손금산입(이익처분상여금과 주총의 상여, 기준·정관 기준초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출 자 임 원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내의 상여금(손금산입), 초과상여 등 위장배당금은 손금불
구분	수령자	세법상규정																					
봉급적 성질 (급여·보수·임금)	사 용 인	손금산입																					
	상 근 임 원	손금산입																					
	비 상 근 임 원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노 무 출 자 사 원	손금불산입																					
	신 용 출 자 사 원	손금산입																					
상여금적 성질 (특별상여)	사 용 인	범위관계없이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이 원칙이지만 노사협의된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당결산기이익금(잉여금) 감액으로 회계반영해도 당결산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가능함)																					
	비 출 자 임 원	지급기준내만 손금산입(이익처분상여금과 주총의 상여, 기준·정관 기준초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출 자 임 원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내의 상여금(손금산입), 초과상여 등 위장배당금은 손금불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법인세법·소득세법 등)
	구 분	수 령 자	세 법 상 규 정
			산입 · 지급기준초과 상여금(손금불산입) · 이익처분상의 상여금(손금불산입)
퇴직금적 성질	사 용 인		전액 손금산입, 퇴직금중간정산가능(근로기준법 보호)
(퇴직금·퇴직위로금)	임 원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포함)		1.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동 규정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근로기준법 적용 안 됨) 2.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손금불산입 상여금 제외)의 10%에 근속연수(1년 미만은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3. 퇴직금 없어지고 연봉제로 전환되는 조건부 중간정산만 손금산입 가능
·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퇴직연금충당금(연금납부)의 손금산입한도(퇴직급여충당금부족액 범위액에서)
· 대손금, 대손상각	회수불능금액, 대손추산액은 당기비용(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개별대손, 대손경험추산		· 채권×1%와 실제대손실적액 중 큰 금액 · 대손인정요건-민법상 소멸시효(3년), 수표·어음은 부도일후에 6개월
· 개발비	· 일상적 비용은 당기비용, 비경상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상각 · 지출목적-신제품·신기술 연구, 신제품·신기술 개발 비용 · 조건-비경상적인 발생, 미래의 경제적 효익 기대		좌 등 · 신제품·신기술연구, 신제품·신기술 개발비용 · 비경상적인 발생, 미래의 경제적 효익 기대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비용 · 접대비	발생내용대로 당기비용처리 기업접대비 손금비율한도와 지출요령 접대비 비용부인방법-다음의 ①+② 2가지 모두 적용하여 순차로 따로 손금부인(②부인공제 후, ①부인공제)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법인세법·소득세법 등)		
	① 1년 금액(연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 수입·매출 × (0.03%~0.2% 등)) ② 접대비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시 투명적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아니면 손금불산입, 1만원 이하(까지는) 불필요(2001년부터는 접대비에 대해 법인카드 혹은 법인개별신용카드지출액만 손금용인됨)하나, 증빙없는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밀비 성격으로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되고 상여처분됨. 그러나 애초부터 임원 급여처리하면 손금반영해도 됨. ③ 신용카드 아닌 지출의 접대비명세서 제출은 불필요해짐. ④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로 투명증빙 없는 것 : 해당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만 적용, 대신에 지출액×2%의 가산세는 부과 안됨(시행령 제120조제4항). ⑤ 건당 3만원 초과 일반 경비로 적격투명증빙 없는 것 : 지출액×2%의 가산세는 부과됨.			
	일반비용지출·접대비 등의 사용에 관한 거래증빙·신용카드 증빙사용요건과 세무상 불이익요약			
	구분	해당금액	관련증빙요건	증빙불비 불이익 및 효과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	1만원 초과 (10,001원부터)	신용카드(2001년부터는 법인카드만 가능, 개인계좌 출금되고 법인이 연대책임지는 법인개별카드도 포함), 세금계산서, 계산서, 국세청 승인 현금영수증 등	○손금불산입→법인세 등 추가 부담되는 결과임. ○위장신용카드 거래분 : 손금불산입
		1만원 이하 (1만원까지)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건당 1만원까지는 실제 사용했다는 사실입증이나 영수증 있으면 세무불이익 없음.
	모든 금액	지출증빙·영수증 등 아예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되며 증빙없으므로 기밀비로 간주되고 사용지출자의 상여소득으로 처분됨(사용자 불분명하면 몰아서 대표자상여처분).	
	거래처 경조사비(기밀비성) 20만원 초과	창첩·초청장 등, 부고안내서, 기타 업무 관련성 -20만원까지	원칙적으로 기밀비로 분류되고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손금산입 안됨이 원칙임(20만원까지는 손금산입 가능). 관련 금액을 임원의 보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계정과목 및 평가논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법인세법·소득세법 등)
	구분	해당금액	관련증빙요건	증빙불비 불이익 및 효과
				손금부인가능성 때문에 거래처 경조사비를 애초부터 지출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며, 근로소득연말정산에 합산하면 손금산입되면서 소득금액(4,500만원 초과)×5% 소득공제로 절세 가능함(2001년부터).
일반구입지출 (매입세액공제)	3만원 초과	지출증빙(신용카드(직원 개인카드도 가능)·세금계산서·계산서)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지출증빙 없거나 영수증만 있다면 지출 거래금액×2%의 가산세 부담	
	3만원까지	영수증·거래사실서류·지로청구납부서 등	없으면 거래사실 부인되고 손금불산입 될 수도 있음(지출증빙은 없어도 되지만 적법영수증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개인영수증 등 정도는 있어야 함).	
직원경조사비 (복리후생비) 20만원 초과		경조사 사실 확인	사회통념범위(20만원)내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되나 사회통념상 초과금액은 해당직원의 상여소득으로 처분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 관련지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은 없어도 되나 영수증·청구서가 없다면 의심적어비용부인가능성 있음.	
		비사업자로부터의 구입, 공급대가지급	지출증빙은 없어도 되나 거래사실 입증 기타의 서류(영수증·입금표)는 있어야 함. 증빙이 없다면 손금불산입 가능성 있음.	
		송금명세서 제출로 대체가능(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간이과세입대료, 임가공료, 간이과세운송료 등, 재활용인터넷, PC구매, 홈쇼핑, 우편판매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지출증빙서류 입수·보관불필요(시행규칙 제79조제1호~제9호)	포괄양수, 방송, 전화, 국외거래공매·경매·수용, 주택임대용역, 금융보험, 국외항행용역, 택시 등	

계정과목 및 평 가 논 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처리 개요(법인세법·소득세법 등)
· 광고선전비	전액 비용	접대성 기부금과 구분, 전액 손금원칙임(특정인 기증품도 건당 1만원 이하로 연간 3만원 이하 손금인정).
· 기부금	발생주의 비용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주의로 손금인정(어음 등으로 지급하면 비용인정 안하며 다음 년도에 은행에서 결제되어야 비용인정) · 법정기부금 - 2009년부터는 50% 인정(국가, 지자체 등) 손금불산입 기부금(무관)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공익성) = 과세소득금액 (= 소득 - 결손금) × 10%
· 지급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주의로 이자비용계상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등은 지급이자·사채이자 등과 합산 · 장기매입채무에 대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유효이자율법 적용상각금액도 이자비용으로 처리함. · 건설자금이자(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 건설 등의 이자원가) → 취득원가로 하고 비용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조건적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무관, 투기성보유 부동산 - 업무무관 자산 - 특수관계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 $\frac{\text{무관자산가액}}{\text{총차입금}}$ · 채권자 불분명 개인사채이자 등 부인(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 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부인(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 건설자금이자자는 고정자산원가로 처리하며 당기지급이자에서 제외하고 손금불산입 ⊕ 유보시킨후 향후 감가상각시 부족액 범위에서 ⊖ 유보조정해 나감.
비영리법인 · 손익구분계산	있는데로 처리	금융이자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비용처리(손익계산서에 반영조건임)



3. 법인세법상 주요 쟁점 예설 요약

(1)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의 양도·할인관련 매각·차입거래의 회계·세무비교

구분 비교쟁점	매출채권의 완전양도매각거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차입하는 거래
기본개념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완전양도·매각하여 양도자는 채권의 권리가 없고, 양수인이 전적인 권리행사(채권의 조건변경, 만기연장 및 단축은 모두 양수인의 권리임) · 기업회계에서 매출채권의 완전양도로 판단하여 처분손실대로 회계반영하면 세무에서도 그대로 따라서 당기 전액손금임(재법인 46012-280, 2001. 10. 17).	매출채권 소지자가 자금차입이나 금융을 얻기 위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팩토링회사에서 금전을 대여받는 거래, 다른 담보로 바꿔주고 채권을 그대로 찾아올 수 있음. 타인은 채권의 담보목적 단순보관(채권의 조건변경, 만기변경, 관련수익변경은 모두 채권양도인의 권리임)
부도문제 발생시 해결 등	부도, 신용불량위험, 환매위험은 일반적 확률적으로 내재된 문제이며 매각거래자체의 효력에 영향없음. 상호손해보상약정(양수인이 채권보유하면서 모든 권리의무행사, 채권이 당초 양도인에게 이관되지 않음)	· 양도자가 환매의무부담, 양도자의 재매입약정 · 부도발생시 채권은 양도인에게 자동이관 · 양수자의 재매입청구약정
채권만기 단축 연장 관련거래	만기연장수익은 전적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만기단축관련 비용도 전적으로 채권양수인 부담함.	만기연장 추가이자는 채권당초양도자에게 귀속되며, 해당차입조건이나 할인이자가 조정됨.
회계반영	자산차감 차) 현 금 90 매각손실 10(영업외비용) 대) 매출채권 100	부채증가 차) 현 금 92 지급이자 8 대) 차 입 금 100
거래사례 3개월짜리 채권 100을 12/1일 할인	3개월간 총 6% 할인율로 매각 차) 현 금 94 매각손실 6(전액 당기손실) 대) 매출채권 100	3개월간 월 1.5%이자로 할인차입함. 차) 현 금 95.5 지급이자 1.5) 기간구분 선급비용 3.0 대) 차 입 금 100 (할인율 비교적 낮음)
기업회계 세무처리	전액 당기비용반영, 전액 당기손금산입됨(채권만기기간 안분하여 비용·손금조정할 필요없음).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안분금액은 지급이자로 처리. 전액을 지급이자 반영하면 2개월선급비용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한 후 내년에 손금추인됨.

구분 비교쟁점	매출채권의 완전양도매각거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차입하는 거래
유리·불리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이 충분한 회사에 적용유리 · 재무구조 나쁘고 부채비율 높은 회사에 유리 · 이익도 적게 하고 세금도 적게 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이 부족한 회사에 적용 · 부채비율 낮은 회사에 무난함. · 이익 많고 세금도 많게 하는 효과
해당차액의 소득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자의 계정과목은 매각손실이라도 양수인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임. · 양수자가 금융기관이면 원천징수안하나 양수자가 일반개인이나 비금융법인이면 양도자가 이자소득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차손액×14%⊕개인은 주민세 1.4% 합한 15.4%원천징수로 정산계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임. 이자소득의 선지급으로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함. · 양수자가 금융기관이면 원천징수안하나 양수자가 일반개인이나 비금융법인이면 양도자가 이자소득원천징수한 것으로 순액정산함(차손액×14% 원천징수하며 ⊕개인은 주민세 1.4% 합한 15.4% 원천징수로 정산됨)
해당액의 회계세무문제	<p>차손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아님(정식 금융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지급조서 작성은 불필요. 또한 지급이자계정에 넣을 필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임(정식금융 지급이자임). · 지급이자 계정과목으로 분류됨. · 회사의 완전양도(없앴)·담보제공(차입금반영)의 회계처리반영된대로 세무의 손금해당액이 그대로 인정됨.

(2) 퇴직금지급관련 내부충당금 및 사외예치금의 회계처리 및 손금산입 개념 비교

구분 개념	퇴직급여충당금 (내부충당적립)	퇴직연금
근거규정및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6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근로기준법 관련성	근로기준법 제34조(계속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급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시행령 제11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설정방법및 자금흐름	회사내부설정 및 외부지출유보(손실, 비용원가 혹은 잉여금 감액계상)	회사외부적립, 자금유출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혹은 잉여금) 100 (대) 퇴직급여충당금 100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대) 현금 100



구분 개념	퇴직급여충당금 (내부충당적립)	퇴직연금
세무상 한도 및 손금산입 방법 세무조정	총퇴직급여추계액×15%만 손금 인정 나머지 85%는 내부충당해 도 손금불산입유보로 반영됨. 설 정 안하면 손금반영 할 수 없음.	내부충당금 이외 전액 손금산입, 전액의 손금산입가능(외부예치금에 한함). 금감 원의 적극 권장상품. 퇴직금을 직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 로 충당금설정해야 함.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혜택 없음(부담금=임금총액 ×0.2%)	임금채권부담금경감(임금채권보장법 제9 조)
손익계산 효과	충당금 손금산입의 법인세부담줄 이기 위해서는 필히 재무제표 반 영해야 하므로 손익감소, 잉여금 감소가 필수적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그러나 손 익감소, 잉여금감소시키면서 충당금 반 영해야 함.
재무상태 표효과	차변에 손익, 잉여금감소시키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계정계상→ 부채비율 증가시킴	· 예금·신탁납부액은 자산계상 · 충당금 반영하여 부채계상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충당금계정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어 부채비율 감소됨.
연말대차 대조표계 상방법	(대) 퇴직급여충당금 100	(대) 퇴직연금충당금 100 퇴직연금 (-) 70 잔 액 30
부채비율	부채비율 증가	부채비율에 관계없음(재무구조 개선). 상대적으로는 부채비율 내려감.
권리관계	회사내부자금으로 지급(구체적 자 금확보 안된 것임)	종업원이 직접 받음(퇴직자가 수급권갖 고 있음)
업계현황 상품판매 기간 등	· 내부충당 계속 · 세무상 불이익 지속 · 내부계산 계속유지 가능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취급기관 및 상품 명	회사내부자체 운영자금	· 퇴직연금(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

(3) 판촉비·판매장려금·매출할인·매출에누리·경품 등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계 정	거래방법개요	회계·세무(법인세)·부가세법상 처리방법
반품, 매출환입	판매취소, 불량회수	원천적으로 매출 아님. 취소, 세금계산서 교부제외금액
매출에누리	판매시점부터 깎아줌 (수량초과할인 등)	매출아님. 순매출액으로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제외 금액(작은 상태가 과표임)
판매수수료	판매를 위한 정식대행	수탁자, 대행자가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자유판매자 개인인 경우 회사가 판매자에게 판매실적지급하면서 원천징수(3.3%)
매출할인	판매대금 최종 확정 후 조기수금할인(금융)	기업회계·법인세법상 매출액 차감항목, 현금주의로 할인해준 당해기 혹은 다음기 감액.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에서도 재화·용역 공급후 매출할인은 제외됨.
판매장려금	판매확정 후 일정조건(수량·금액) 달성 관련 감액(판매지원, 촉진비)	기업회계상은 매출에누리와 같이 보아 매출액감액, 법인세법상은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매출액 감액 아님), 부가세법상은 세금계산서 과표차감 안하고 총액이 과표임. 세무상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이 불투명하므로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액임.
경품, 사은품	불특정다수를 위한 현금, 현물제공	특정인이면 접대비(특정인이라도 개당 1만원 이하, 연 3만원까지는 광고선전목적의 소액물품 광고선전비 처리 가능), 불특정하면 광고선전비(사업상 증여이면 매입세액 불공제하며, 매출부가세도 과세안함)
지급지연이자	판매대금 수금만기후 지연으로 인한 추가이자수입	잡수입임. 이자성이지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아니므로 원천징수 안해도 됨. 과세표준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안함. 입금표만 작성교부

(4) 12월 31일 결산법인의 이익배당방법론과 무상증자의 회계처리와 원천세 부과 상황비교

배당·자본정책	회 사 처 리	법 인 주 주	개 인 주 주
배당소득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있음 (실제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 : 원천징수 안함. · 외국법인 : 조세조약 세율 (출자법인은 10%, 일반주주는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내국인 : 14% (주민세 1.4%) : 다른 특별한 경우 해당안되는 조건 · 외국인 : 총 15% 최고세율 (15%에 주민세도 포함). · 장기(1년)보유 우리사주 조합 : 0% (농특세 0%) (조특법 제88조의4)



배당·자본정책	회 사 처 리	법 인 주 주	개 인 주 주
현금배당 (당연도 결산 실적의 정기 배당)	당연도 잉여금(순이익)감액, 원천징수함. · 결산반영 회계 분개 차) 이익잉여금/대) 미지급배당금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되었고 자동이익산입으로 법인세 납부함(배당받을 때 법인세 원천징수는 안됨).	· 소득세과세대상(소득세 14%⊕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됨→개인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총액화개념으로 11%를 소득에 합산하고 11%를 선납세액으로 공제함) · 1년 이상 장기보유 우위사주조합원은 과세되지 않음 : 세금·농특세도 없음(조특법 제88조의4)
주식배당 (현금배당 대신 자본금 증액 시키면서 주식으로 지급)	당연도 잉여금·순이익 감액→원천징수함. · 분개 차) 이익잉여금/대) 예정자본금 (미교부주식)	기업회계상으로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안함(원천징수 안됨)→그러나 세무상 익금산입세무조정(⊕유보)하여 법인세는 납부함.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 과세됨. (서울은 상동)
무상증자 (과거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배당)	· 전기이익잉여금 등 감액 · 자본금 증액등기, 개인주주는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함.	영업외수익은 아니고 보유주식수만 증가→익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는 납부함.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 과세됨. (서울은 상동)
무상증자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배당)	· 이월자본잉여금 등 감액 · 자본금 증액 등기, 개인주주도 과세안되고 원천징수 안함.	영업외수익 아니고 주식수만 증가→익금산입 아니고 법인세 납부의무 없음. (실제 매각시만 과세됨)	의제배당과세안됨. (좌 동) ※ 자기주식보유부분 해당 무상증자는 수취자 입장에서 익금산입됨.
유상증자 (액면)	자본금 증자등기	투자주식원가	주식취득원가(과세안됨)
유상증자 (초과액)	주식발행초과금	투자주식원가	주식취득원가(과세안됨)
주식액면분할	발행주식수증가	보유주식수증가·과세안됨.	보유주식수증가(과세안됨)

(5) 법인가간 배당지급받는 회사의 익금여부와 과세방법

- 과거연도 잉여이익에 대한 배당금지급시 개인주주는 14%(지방소득세까지 15.4%) 원천징수되는 반면,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은 전액 지급받으며 원천징수 안함(그러나 해외·외국주주는 법인이라도 조세조약제한세율(약 10% 혹은 15%)로 원천징수함).

배 당 원 천		수취법인의 회계·세무처리	지급법인의 회계·세무처리
배당소득 이중과세방지 의 익금불산입		기관투자가 : 30% 익금불산입(일반법인과 동일),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80% 이상인 경우 2009년부터 전액 익금불산 입·자회사지분을 80% 이하시는 80% 익금불산입, 일반회사 는 전액(보유지분비율 100%)·50%(지분비율 50% 이상, 주 권상장은 40% 이상) 혹은 30%(모든 경우) 익금불산입함.	
현 금 배 당		(차) 현금 100 (대) 영업외수익 100 (혹은 유가증권감액) 자동익금산입으로 과세되지만 법인가간 배당은 전액, 50% 및 30% 익금불산입	① 결산시 잉여금에서 배당금 (지급예정액)을 감액하여 대차대조표상 미지급배당금 으로 부채계상하지 않고, 잉 여금 처분계산서(안)에만 반영함. ② 실제지급시 (차) 이익잉여금 100 (대) 현금 100
주 식 배 당		· 회계처리않고 주식수만 증 가 · 세무상 익금산입(50% 또는 30% 익금불산입)하며 유보 처분함.	(차) 이익잉여금 100 (대) 자본금 100
무 상 증 자 재 원	이익준비금(전기분) 기타자본잉여금	· 회계처리안하고 주식수 증가 ·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 유 보처분	(차) 자본잉여금 100 (대) 자본금 100
	주식발행초과액	· 회계처리않고 주식수 증가 · 세무상으로도 익금불산입 · 자기주식부분은 익금산입됨.	(차) 주식발행초과금 100 (자본잉여금) (대) 자본금 100



배 당 원 천		수취법인의 회계·세무처리	지급법인의 회계·세무처리
재평가적립금	회계처리안하고 주식수만 증가	· 세무상으로 익금불산입	(차) 재평가적립금 300 (대) 자본금 300
토지(83년전 취득 처음평가)	·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 유보처분	· 세무상으로는 익금불산입 ※ 유형자산(건물·토지 등)의 재평가로 기타포괄손익반영시 자산증가분은 익금불산입과 익금산입으로 동시에 대응세무조정함.	① 재평가차익 중 세율 1% 분은 익금산입하며, 3% 분은 익금불산입 ② 재평가세는 비용·손금아니고 차액의 차감항목임. (차) 건물 등 100 (대) 기타포괄손익 100 (자본 항목)
토지(기타)			
건물·기계	· 회계처리 안하고 주식수만 증가	·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 유보함.	(차) 자본잉여금 100 (합병차익) (대) 자본금 100
합병차익(자산평가증)	· 세무상 익금불산입함.		
기타 합병차익	·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 유보함		(차) 자본잉여금 100 (분할차익) (대) 자본금 100
분할차익(자산평가증)	익금불산입 사항		
기타분할차익	익금산입 유보처분함		(차) 자본잉여금 100 (감자차익) (대) 자본금 100
감자차익(2년내 자본전입)	익금불산입 사항		
기타(2년후)			

(6) 주주유형별 배당금수취에 따른 적용세율과 과세방법비교(법인세법 제73조 관련사항)

주 주 종 류	원천징수세율, 종합소득합산여부, 익금산입여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 (개인)	14%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와 분리과세원천징수종결 (개인별 연 2천만원 초과액부터 종합소득합산, 개인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개인)	14%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후 종합과세소득에 합산 [배당소득총액화 가산(11%) 및 배당세액공제(11%)를 적용하여 이중과세완화시킴]
비상장 일반법인의 모든 주주배당소득(개인)	14%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소득에 합산(배당소득총액화 가산 및 배당세액공제 적용)
장기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제88조의4)	소득세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종합소득에 합산 안함), 모든 법인 해당(일반⊕상장, 코스닥 포함) ① 소액주주이며, ② 액면 1,800만원 이하이고, ③ 1년 이상 예탁조건임.
상장법인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개인) 비과세 및 특례규정 2010. 12. 31 일몰종료로 삭제 (조특법 제91조)	5% (⊕주민세 0.5%⊕농특세 0%) 원천징수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개인종합소득에도 합산 안함) : 주식 3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주식에 한함(보유주식 액면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액면가 3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즉 세율은 0%).
일반적 법인주주 (법인주주)	배당금지급시 법인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안되며, 전액 지급받은 후 영업외수익에 합산과세됨(주식배당과 잉여금처분 무상증자는 영업외수익 아니나 익금산입됨. 자본잉여금무상증자전입액은 영업외 수익도 아니고 익금도 불산입함).
주권상장법인의 기관투자자주주(법인주주)	법인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안되며 전액 지급받은 배당수익×30%를 익금불산입함(기관투자도 일반법인과 같음).
지주회사주주 (법인주주)	법인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안되며, 2009년부터는 100% (지분비율 80% 초과 출자조건,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은 40% 초과 출자비율임), 일반적인 경우 80% 익금불산입함. 단, 사업관련손자회사, 금융지주손자회사는 제외
일반법인간 투자의 일반주주	100% 익금불산입(자회사 보유지분 100%시), 50% 익금불산입(지분 50%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30% 지분비율 이상) 30% 익금불산입(모든 지분비율에서 받는 배당액의 익금불산입)